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V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2019.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8. 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65.3조원, 총지출 434.1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1.2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0.6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각각 7.1조원, 7.9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절한 운용 방향 및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9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4대 공적연금, 일자리사업, 미세먼지 대응사업 등 34건의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I. 개 요 / 1

1.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1
가. 현 황	1
나.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4
2.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8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8
(1) 현 황	8
(2)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9
(3)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11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15
다.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16

II.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회별 분석 / 18

1. 위원회 공통	18
가. 현 황	18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8
(1) 추가경정예산 사업 실적행률 개선 필요(전 부처 공통)	18
(2) 해외 청년 취업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전 부처 공통)	19
2. 국회운영위원회	21
가. 현 황	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1
(1) 연례적인 기본경비 이월 지양 필요(국가인권위원회)	21



CONTENTS

3. 법제사법위원회	23
가. 현 황	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4
(1) 소년원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법무부)	24
(2)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 과다편성(대법원)	25
(3) 등기특별회계 기본경비의 연례적 조정 집행 등 반복(대법원)	26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적정 규모 운용방안 강구 필요(대법원)	27
4. 정부위원회	30
가. 현 황	30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31
(1) 보증기금별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금융위원회)	31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재원 축소방안 마련 필요(금융위원회)	33
(3) 금융중심지 성과 제고 필요(금융위원회)	34
(4) 판매장려수당 요율 변경 등 상품구조 재설계 필요(금융위원회)	41
(5) 기본경비에 대한 연례적 전용에 대한 주의 필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4
(6) 부패신고자 포상금보상금 지급관련 법정기한 준수(국민권익위원회)	45
(7) 체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국가보훈처)	45
5. 기획재정위원회	47
가. 현 황	47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48
(1)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집행 실적 부진(기획재정부)	48
(2)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특별회계예수금 수납실적 부진(기획재정부)	49
(3) 국세청 심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국세청)	49



CONTENTS

(4) 고역소송 패소율 관리 필요(국세청)	51
(5) 국세상담센터 응답률 제고 필요(국세청)	55
(6)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의 집행관리 필요 (관세청)	56
(7)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 편성 문제(통계청)	58
6. 교육위원회	61
가. 현 황	6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62
(1) 교부금의 연례적 이월 해소 필요(교육부)	62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5
가. 현 황	6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66
(1) 우주원자력 분야 대형 R&D 사업 관리 강화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66
(2) 보험보상금 사업 조치결과 부적절(과학기술정보통신부)	67
8. 외교통일위원회	69
가. 현 황	69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70
(1) 무분별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조정문제 개선 필요(외교부)	70
(2) 재외동포재단 예산 내역조정 최소화 필요(외교부)	71
(3)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집행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강화 필요(통일부)	72
(4) 국내·해외 출범회의,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 참석률 제고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4



CONTENTS

9. 국방위원회	76
가. 현 황	76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76
(1)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 충원을 통한 군무원 인력 운영률 제고(국방부)	76
(2) 부서관(하사, 유급 지원병)의 적기 충원 대책 마련 필요(국방부)	78
(3) 자항기뢰 사업(방위사업청)	80
10. 행정안전위원회	82
가. 현 황	8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83
(1) 연수원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적절한 예산편성에 의한 초과지출 최소화 필요 (행정안전부)	83
(2) 신입경찰관 교육인원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경찰청)	85
(3) 정규 채용을 통한 전문의료인력 충원 노력 필요(소방청)	86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8
가. 현 황	88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88
(1) 기존 체육시설의 이용이 저조한 상태에서 신규 시설을 건립하는 문제 (문화체육관광부)	88
(2) 낮은 공연연습장 가동률과 운영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90
(3) 집행 부진사업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문화재청)	91



CONTENTS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3
가. 현 황	9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94
(1) 부적절한 성인지 예산 분류 주의 필요(농림축산식품부)	94
(2)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95
(3) 해양사고 예방 대책 마련(해양수산부)	96
(4) 생분해성어구 보급 활성화(해양수산부)	98
(5)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 손실보상금의 적정예산 확보 필요(농촌진흥청)	99
(6)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중 지자체 보조사업 연례적 실집행 부진 개선(산림청) ..	101
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3
가. 현 황	10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04
(1)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의 전력거래가격 예측 정확도 제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104
(2)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의 보조금지급 요건의 사전검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106
(3)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 자펀드결성 지원 반복(중소벤처기업부)	107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실집행률 개선 미흡(중소벤처기업부)	108
(5) 국제특허심사지원 사업의 과도한 예산 불용(특허청)	109
14. 보건복지위원회	111
가. 현 황	11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11
(1)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실적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111



CONTENTS

(2)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보건복지부)	112
(3) 정신보건시설 확충 사업 실적행률 부진(보건복지부)	113
(4)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보건복지부)	114
(5) 과태료 및 과징금의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및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115
15. 환경노동위원회	117
가. 현 황	117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18
(1)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필요(환경부)	118
(2)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제고 필요(환경부)	120
(3) 산재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 축소 검토 필요(고용노동부)	122
(4) 청소년 체험관 관람객 수 감소 대책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124
16. 국토교통위원회	126
가. 현 황	126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27
(1)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교부액의 이월 방지(국토교통부)	127
(2)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필요(국토교통부)	129
(3) 주거급여 제도정착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국토교통부) ..	131



17. 여성가족위원회	133
가. 현 황	13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33
(1)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및 산림센터 건립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여성가족부)	133
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최근 3년 간 2번 이상 지적된 사항	136

I. 개 요

1.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가. 현 황

국회는 2018년 12월 8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¹⁾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1,833건, 부대의견 19건을 채택하고, 같은 법 제127조의2²⁾에 따라 4건³⁾을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였다.

시정요구제도는 2003년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⁴⁾ 국회가 결산 심의를 통하여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법」에는 시정요구의 유형으로 변상과 징계만이 예시되어 있으나 국회는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⁵⁾의 5가지로 구분하여 운용 중이며,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로 적용되기도 한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제도개선이 983건으로 가장 많고 주의 568건, 시정 320건, 징계 2건 순이다. 이 중 40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1)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① 환경신기술인증 및 활용 활성화 실태,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의계약 실태,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④ K-2 전차 파워팩, 울산급 Batch-II·Batch-III 가스터빈 획득방식에 대한 감사가 요구되었다.

4) 「국회법」 개정(법률 제6855호, 2003.2.4., 일부개정)에 따라 제84조제2항 후단 신설

[결산 시정요구 유형 및 조치대상 기관]

시정요구 유형	적용 기준	조치대상 기관
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 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제도 개선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업무 가이드(편람)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합계
결산	0	2	316	555	980	(40)	1,813
예비비	0	0	4	13	3	(0)	20
합계	0	2	320	568	983	(40)	1,833

주: 1)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의 유형이 있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에서 중복은 제외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2018.12.)

국회 결산심사 결과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건수는 2013회계연도 결산 시 1,541건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시 2,061건으로 매년 증가하였다가 2016회계연도 결산 시 1,805건으로 감소하였고, 2017회계연도 결산 시 1,833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심사 결과 현황]

(단위: 건)

회계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정요구	1,541	1,812	2,061	1,805	1,833
부대의견	26	25	27	25	19
감사요구	4	4	3	- 주2)	4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함

2)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본회의 계류 중임(2019. 7. 현재)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정요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변상은 최근 5년간 1건, 징계는 최근 5년간 7건에 불과한 반면 제도개선은 최근 5년간 4,65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회계연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2013	0	2	385	464	723	(33)	1,541
2014	0	2	442	526	875	(33)	1,812
2015	1	1	382	601	1,126	(50)	2,061
2016	0	0	326	581	947	(49)	1,805
2017	0	2	320	568	983	(40)	1,833
합계	1	7	1,855	2,740	4,654	(205)	9,052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함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에서 중복은 제외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직전 2개 연도(2015회계연도 또는 2016회계연도) 결산 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한번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반복 시정요구 사항은 200건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72건은 최근 3년 모두 시정요구되었다.⁵⁾ 반복 시정요구 건수는 2013회계연도 201건에서 2015회계연도 221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16회계연도에는 183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회계연도에 200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단위: 건, %)

	2013 회계연도	2014 회계연도	2015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201	210	221	183	200
전체 시정요구	1,541	1,812	2,061	1,805	1,833
반복 시정요구 비율	13.0	11.6	10.7	10.1	10.9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복적인 시정요구는 주로 정부의 시정요구 조치가 적기에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치내용이 미흡하여 시정요구 요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조속히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반복 시정요구를 줄이고, 반복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등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개년(2015~2017회계연도) 동안 모든 해에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2018회계연도에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하도록 시정요구 받았으나 2018년에도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하여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72.7%에 그쳤다.⁶⁾

5)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건 목록은 본권 부록을 참고

6)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9.8., pp.151~153.

법무부에 대하여 국가배상금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하도록 시정요구하여 2018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00% 증액한 2,0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2,185억을 배정받고 세계잉여금 중 3,752억을 집행하였다.⁷⁾

금융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특별협약보증 실적을 제고하도록 시정요구 받았으나, 2018년 운영된 특별협약보증의 보증한도 대비 실제 보증 공급액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⁸⁾

교육부에 대하여 교육급여 수급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집행부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등 보장수준을 확대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2018년 교육급여의 집행률은 81.0%에 그쳤으며 수급자 감소 원인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하여 자문위원의 참석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2018년 국내회의(지역)의 참석률은 60.5%, 해외회의(국내초청)의 참석률은 42.4%로 저조하였다.¹⁰⁾

문화재청에 대하여 문화재보수정비(총액)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2018년 실집행률은 68.3%로 2017년 63.9%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총액계상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¹⁾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국고보조 기준을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많지만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이 재정지원을 적게 받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¹²⁾

7)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9.8., pp.87~90.

8)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분석(정무위원회 소관)」, 2019.8., pp.187~195.

9)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분석(교육위원회 소관)」, 2019.8., pp.67~69.

10)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2019.8., pp.127~130.

11)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9.8., pp.129~134.

12)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8., pp.13~19.

환경부에 대하여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2018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전년대비 0.1%p 하락한 47.5%로 나타났다.¹³⁾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간 예산 조정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집행률은 79.9%로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신규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19.0%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용하였다.¹⁴⁾

13)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19.8., pp.28~31.

14)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19.8., pp.116~119.

[2015~2017회계연도 반복 시정요구사항 중 2018회계연도 조치가 미흡한 주요 사례]

부처	시정요구 사항	시정요구 여부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2015	2016	2017	
대법원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 적정규모 편성	○	○	○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2018년 예산 대비 수납률은 72.7%로 미흡
법무부	국가배상금 예산의 적정규모 편성	○	○	○	2018년도 예산을 전년도대비 100% 증액편성하였음에도 예산부족으로 2,18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의 특별협약보증 실적 개선	○	○	○	보증한도 대비 실제 보증공급액 비율이 70%보다 낮은 보증이 다수 발생하는 등 실적 미흡
교육부	교육급여 수급자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	○	교육급여의 수급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원인 파악 및 대응책 마련 미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참석률 제고	○	○	○	국내·해외회의의 참석률 저조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총액) 사업 실행률 제고	○	○	○	실행행률이 68.3%로 높지 않고, 총액계상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자체 재정분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 기준 개선	○	○	○	국고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 필요
환경부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	○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47.5%로 저조
국토교통부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예산 조정 최소화	○	○	○	신규사업의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과도한 전용 발생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바탕으로 재작성

2.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1) 현황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2019년 2월 ‘조치결과’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5월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후속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후속 조치결과 기준으로 전체 시정요구 1,810건(정보위원회 소관 23건 제외)에 대하여 1,577건(87.1%)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233건(12.9%)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2014~2016회계연도 결산 후속 조치결과에 있어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율은 매 연도 높아지는 추세이다가, 2017회계연도 결산 후속조치에서는 전년도보다 0.1p%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13회계연도 결산	1,523	1,251	272	17.9
2014회계연도 결산	1,812	1,624	188	10.4
2015회계연도 결산	2,045	1,827	218	10.7
2016회계연도 결산	1,781	1,549	232	13.0
2017회계연도 결산	1,810	1,577	233	12.9

주: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가 제출한 각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2019년 4월 말 기준 조치완료라고 보고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총 60건(3.8%)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4월말 기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상황임에도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은 면허료 및 수수료 항목의 수납액 부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2018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은 2,792억 8,300만원으로 세입예산 3,841억 4,000만원의 72.7%에 불과하였으며, 2019년도 세입예산도 2018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기본경비를 이월하지 않도록 소요 예산 경비를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2018년에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 2억 5,700만원을 이월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조치의 내용이 시정요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험보상금 중 ‘부내자 포상금’에 대하여 예산액 초과 집행을 지양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직원보상금 지급률 조정 등 제도개선안을 수립한 것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2018년 부내자보상금 예산액은 379억 1,300만원임에도 총 619억 2,400만을 집행했을 뿐 아니라 초과지출 규모가 2017년 237억원에서 2018년 279억원으로 증가하여 초과 지출을 지양하라는 시정요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이월을 최소화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총예산의 70% 이상을 교부하고 집행을 독려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2018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실집행률은 오히려 전년대비 29.8%p 하락(44.6%→14.8%)하였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부하였음에도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지역현안 특

별교부금 교부 시 사업의 사전준비 현황, 재원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교육부 내에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의 자펀드 선정기간 및 투자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2017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자펀드 조성 및 투자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2018년도 추경예산으로 추가 출자한 15개 자펀드 중 7개가 2019년에 결성되는 등 일부 자펀드 조성이 지연된 사례가 반복되었다.

셋째,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안 마련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효과가 미흡하여 시정요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금 지급중단 사태나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 받아 예산을 2018년 24억 700만원에서 2019년 33억 1,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2019년 예산액이 2018년 집행액에 미치지 못하고 전직지원금의 단계적 인상을 앞두고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2019년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소년원 과밀해소와 시설개선을 위해 전국 11개 기관 중 5개 기관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감호인력을 증원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는데, 소년원 과밀 수용 문제는 과거에 비해 완화되었으나 2018년 말 기준 수용률은 111%로 여전히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정부는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223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¹⁵⁾ 정부는 통상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결산 심의 완료 후 2~4개월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재차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는 2018년 2월에,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는 2018년 5월에 제출되었으며 2017회계연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는 2019년 2월에,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는 2019년 5월에 제출되어 3개월간의 변동사항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조치 노력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로는 조치가 미완료된 사항의 이행상황 또는 최종 조치여부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회법」 제84조에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데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후속 보고¹⁶⁾하도록 하는 등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5)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각 부처에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2018년 4월말 기준 조치중인 사항 232건에 대한 조치상황 보고를 요구한 결과, 2019년 4월말 기준 89건이 여전히 조치미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조치 미완료 사유를 검토하여 법령 개정이나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의안 발의 여부 및 논의 경과,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4월 말 기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완료 사유를 살펴보면, 법령 개정이나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흡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령 개정이나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의안 발의 여부 및 논의 경과, 적정 예산 편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7회계연도 시정요구 조치미완료 사항 중 법령 개정이나 예산 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례]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등 인권강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인권기본법」 제정, 「인권위원회법」 개정,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법무부	범죄신고자 보상금 집행실적 제고	2019년 예산 집행 추이를 지켜본 후 2020년 예산 편성 시 감액 여부 검토 예정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	서울중앙 등 5개 지역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추가 설치하고자 인력 및 예산 확보 노력 중
기획재정부	공용 청사·관사 취득사업의 집행부진 해소	설계, 착공 등 사업 단계별 추진 가능성과 재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겠음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방송통신위원회	국제방송교류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불일치 해소	2020년 예산 편성 시 국제방송교류재단 운영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편성하도록 협의 중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일치하도록 관계부처 협의 중
	EBS의 UHD채널 송신지원 문제 해결	「방송법」 상 송신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 중
외교부	무분별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조정문제 개선	향후 기본경비 편성 시 국외여비 확보 등 세목간 실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음
	관용·외교관 여권 발급비용 별도 편성	2020년 예산 편성 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별도 편성 예정
통일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예수원금 상환 대책 마련	상환이자 예상금액 추계를 보다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음
국방부	입소 귀가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입영신체검사 주관을 입영부대에서 병무청으로 전환하여 병역판정과 입영판정의 검사주체를 일원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세운스퀘어 임대료 수입구조 개선방안 마련	임대료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건물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
행정안전부	교부세 교부시기 관련 법률 개정	「지방교부세법」 개정 검토 중
	정부포상 다양화 및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정원 조정	「상훈법」 개정 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시행령 개정 예정
소방청	119신고자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제거 등	구조·구급 활동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중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입장료 수입에 관하여 협력사가 수입금을 수납,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전시 비용 전액을 국립중앙박물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입장수익을 국고로 납입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협의 중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수익금의 체육기금 편입	관련 연구용역 추진 중으로, 연구용역 완료 후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 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 명확화 및 국가지원 근거 마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및 「농촌진흥법」 개정 추진 중
	직불제 간 상충문제 해소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통해 세부 시행방안 마련 후 법령개정 계획
	적정규모의 직불금 예산 편성	적정규모의 직불금 예산 편성 추진중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국고보조 기준 개선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논의를 거쳐 법령 개정 필요
환경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개선대책 강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및 2020년 예산 증액 협의 중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지원팀 조정해결률 제고	민간조정관 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 추진 중
	중증장애인 작업지도원 지원수당 현실화	2020년 예산 편성 시 단가인상 추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수요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 반영 계획
국토교통부	현신도시건설특별회계 별도 유지 필요성 재검토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 5. 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정부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국회가 의결한 부대의견¹⁷⁾ 19건에 대하여 2019년 4월 말 기준 조치완료 11건, 조치 중 8건으로 보고하였다.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중은 2015회계연도 33.3%에서 2016회계연도 28.0%로 감소하였으나, 2017회계연도에는 42.1%로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부대의견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부대의견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15회계연도 결산	27	18	9	33.3
2016회계연도 결산	25	18	7	28.0
2017회계연도 결산	19	11	8	42.1

자료: 대한민국정부가 제출한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17)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결에 부수하여 국회의 입장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다.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¹⁸⁾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회가 201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 요구(2018.12.8.)한 4건 중 2019년 3월 6일에 1건¹⁹⁾의 감사 결과를 제출하고, 3건²⁰⁾에 대한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2019년 5월 7일 감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현황]

감사요구 내용	결과보고
<p>[환경부의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활용 활성화 실태에 대한 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신기술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환경부의 인증까지 받은 기술이 공사 적용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있는 등 진입 장벽으로 인해 환경신기술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는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활용 활성화 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보급 종합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기관에 개선을 촉구하여야 하는데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환경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려금제와 성공불제를 도입하였으나 추진실적이 부진한데도 개선방안 마련 없이 방치함 ○ 환경시설 설치사업에서 입찰 시 신기술 활용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만 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가점을 받은 낙찰자가 실제 시공에서 신기술 대신 다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함

18)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의 건

20)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활용 활성화 실태에 대한 감사의 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의 건, K-2 전차 파워팩, 울산급 Batch-II·Batch-III 가스터빈 획득방식에 대한 감사의 건

감사요구 내용	결과보고
<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계약 중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고 일부 계약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계약을 분할하여 수의로 계약한 사례가 발견되었음.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의계약이 관련 법령에 맞게 체결되었는지 등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공사 분야를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공사를 분리발주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됨 ○ 이전지역 소재 업체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수의계약 상당 부분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옥 시설물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부적절하게 개보수 공사를 시행함
<p>[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부과대상 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간의 유착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였음.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 조치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이의신청 건 담당자 및 담당과장이 218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경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검토하였는데도 징계위원회에 미회부한 것으로 확인됨 ○ 2018년부터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접촉사실 보고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체계적인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p>[K-2 전차 파워팩, 울산급 Batch-II·Batch-III 가스터빈 획득방식에 대한 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K-2 전차에서 파워팩(엔진+변속기)의 획득방식과 울산급 Batch-II, Batch-III 사업에서 가스터빈 획득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청은 K-2 전차 양산계약 체결 당시 관급이 합리적인데도 파워팩, 가스터빈, 천공 레이더와 발사대를 도급품목으로 분류함으로써 관급 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윤 총 729억원을 보상함 ○ 도급품목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체계업체의 위험부담 수준에 상응하도록 추가 보상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가격의 일정률만큼 획일적으로 이윤을 보상하도록 함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됨

Ⅱ.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회별 분석

1. 위원회 공통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위원회 공통 사항은 총 12건으로 주의 4건, 제도개선 8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7건이며, 조치중 5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추가경정예산 사업 실적행률 개선 필요’ 등 2건이다.

[전 부처 공통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공통	0	4	8	(0)	12	7	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추가경정예산 사업 실적행률 개선 필요(전 부처 공통)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실적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고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치고 실적행이 부진한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정부는 향후 추경 편성 시 연내 실적행 가능성, 사업계획 등 검토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 중 실행이 저조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새만금개발청의 동서도로 건설 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에 866억 7,900만원을 편성하고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본예산으로 편성한 공사비 834억 400만원의 집행률은 97.3%로 나타난 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공사비 200억원의 집행률은 57.5%로 저조하였다.¹⁾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에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육상전원공급시설 설치와 고용·산업위기지역인 통영·군산·목포에 소규모 항포구의 접안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176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7개 내역사업 중 5개 사업의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하였다.²⁾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은 1,000억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0억원이 증액되어 전액이 집행되었으나, 일부 자펀드의 결성이 2018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다.³⁾

(2) 해외 청년 취업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전 부처 공통)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청년들에 대한 인턴형 해외 취업프로그램 추진 시 학생 및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취업현황 모니터링 등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인턴형 해외 취업프로그램 참여자의 현지기업 취업률이 여전히 저조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정요구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였다.

산림청의 해외산림인턴 지원 사업은 2018년 파견인원 20명 중 파견기업 채용 인원이 1명, 파견기업 외 산림분야 취업 인원이 1명에 불과하여 지원대상자의 취업

1)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19.8., pp.186~189.
2)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9.8., pp.115~117.
3)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분석(정무위원회 소관)」, 2019.8., pp.163~167.

률이 저조하였다. 또한 파견대상 기관에 주인니한국대사관 등 산림분야 근무경험 제공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이 포함되었고, 취업역량강화 교육의 주요 내용은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시험 대비로 산림분야 해외취업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해외 항공인턴십 지원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에 해외인턴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K-Move스쿨 사업⁴⁾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4) 해외취업에 필요한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국회운영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총 62건으로 시정 5건, 주의 27건, 제도개선 30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52건이며, 조치중 10건으로 보고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연례적인 기본경비 이월 지양 필요’ 1건이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2	7	0	10	10	0
대통령경호처	1	7	1	0	9	9	0
국회	0	14	16	0	30	21	9
국가인권위원회	3	4	6	0	13	12	1
합계	5	27	30	0	62	52	10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연례적인 기본경비 이월 지양 필요(국가인권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기관운영 경비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2014년 예산현액 62억 6,6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9400만원 발생했으며, 이후 여유재원의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를 이월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였다. 2017년 이월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7,100만원에 의한 예산현액 68억 7,200만원 중 2억 8,900만원이었다. 또한 비목의 성격상

이월 허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복리후생비와 직책수행경비에서 이월이 발생했다.

국회는 이월행위가 「국가재정법」 제 48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경상적 경비의 15%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기본경비를 연례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시정요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없이 기본 경비를 이월하지 않도록, 소요 예상경비를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조치완료를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년도에도 여전히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이월액 규모는 2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8,900만원과 대비해볼 때 유사한 규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이월에 대해 2018년 조직개편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2018년 7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집행 잔액을 다시 이월시켰다.

사업비를 이월하고 전년도 이월액을 집행하지 못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계획 부실 및 사전 절차 이행 준비 미흡 등에 기인한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면밀한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소요 예상경비를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예산에 적정히 편성함으로써 기본경비의 연례적 이월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3. 법제사법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은 총 121건으로 시정 6건, 주의 39건, 제도개선 79건이며, 이 중 3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02건이며, 조치중 19건으로 보고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 중 2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소년원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등 4건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대법원	2	15	19	0	36	34	2
감사원	2	3	4	0	9	9	0
헌법재판소	1	8	8	0	17	15	2
법무부	1	9	34	1	43	28	15
법제처	0	4	14	2	16	16	0
합계	6	39	79	3	121	102	19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법무부	2	0	2
합계	2	0	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소년원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법무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법무부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년원의 시설·규모 등의 교육환경을 적정하게 마련하여 보호소년의 심신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소년원 과밀수용 및 감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년원 운영실태가 처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에 따라 소년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소년원 시설개선, 감호인력의 확보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소년원 과밀해소와 시설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11개 기관 중 5개 기관을 완료(대구, 춘천, 광주, 청주, 전주)하였고, 감호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2018년에는 감호인력 38명과 교육인력 2명, 2019년에는 감호인력 34명과 교육인력 13명을 증원하였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법무부는 소년원의 적정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소년원생 수용 사업을 통해 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보호소년들을 소년원에 수용하고, 교정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13~17) 소년원 하루 평균 수용인원이 정원대비 30%를 초과하는 등 보호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2018년 들어 과거에 비해 소년원 과밀 수용 문제는 완화되고 있으나, 전국 소년원의 2018년 말 기준 수용률은 111%로 여전히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또한 2019년 현재, 전국의 11개 소년원 중 시설개선이 완료된 기관을 제외한 6개 소년원 중 5개 시설은 건축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다. 이러한 노후 소년원의 생활실은 대부분 10~15인 규모의 대형 집단혼거실로 구성되어, 인권침해와 교정교육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법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의 과밀 수용과 노후시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년원의 적정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2)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 과다편성(대법원)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은 2,781억 9,300만원으로 세입예산 3,389억원의 82.1%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2013년 이후 매년 약 600억원 이상 수납액 부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세입예산을 과다계상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면허료 및 수수료 항목의 수납액 부족이 반복하지 않도록 수납실적을 반영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며, 대법원은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대법원의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과다편성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18년도 대법원의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은 2,792억 8,300만원으로 세입예산 3,841억 4,000만원의 72.7%에 불과하였다.

최근 5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 연도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수납액 규모는 큰 편차가 없는 반면, 세입예산 규모는 변동폭이 큰 편이므로 수납액을 기준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2017년도 이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을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수납액 규모의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과다편성된 전년도 예산액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이 과다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19년도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도 전년도인 2018년도 예산액 규모를 기준으로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는 바¹⁾, 2017년도 결산심사 시 국회가 제기한 시정요구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을 수납액을 기준으로 연도별 증감 추이, 인지수수료 인상 등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적용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3) 등기특별회계 기본경비의 연례적 조정 집행 등 반복(대법원)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등기특별회계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3억 6,200만원, 특근매식비(210-15목) 1억 6,000만원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 6억 8,700만원으로 세목 조정 집행하였는바, 이는 예산액 55억 9,500만원 중 12.3%에 해당하며, 2015년 및 2016년도에 감소하였던 세목조정규모는 2017년 다시 증가하였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지출되는 경비인 기본경비의 세항목 간 연례적 조정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대법원은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집행 시 조정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대법원의 등특 기본경비는 2018년도에도 운영비 조정 집행 문제가 반복되었다.

2018년도 대법원의 등특 기본경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억 600만원, 기타운영비(210-06) 9,600만원 등을 일반수용비(210-01) 6억 800만원으로 세목 조정하여 집행하였다.

1) 2019년도 대법원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은 2018년도와 동일한 3,841억 4,000만원이다.

[2018회계연도 등록 기본경비 운영비(210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2018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수용비	622	622	0	608	0	1,230	1,228	0	2
공공요금및제세	686	686	0	△306	0	379	373	0	6
특근매식비	201	201	0	△38	0	163	159	0	4
유류비	917	917	0	△29	0	888	871	0	17
시설장비유지비	195	195	0	△48	0	147	147	0	0
복리후생비	1,803	1,803	0	△91	0	1,712	1,710	0	2
기타운영비	406	406	0	△96	0	310	309	0	1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이 2018년도에도 대법원 등록 기본경비의 운영비 조정 집행 문제가 반복되었는 바, 2017년도 결산심사 시 국회가 제기한 시정요구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2019년도 등록 기본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운영비 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등기과 및 등기소의 운영비 각 항목별 집행실태 및 소요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적정 규모 운용방안 강구 필요(대법원)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년도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획액(59억 3,400만원) 대비 170%인 101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공탁출연금 초과수입 38억 6,200만원을 모두 여유자금으로 유치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기금사업 중 소송구조지원사업의 경우 45억 6,000만원으로 2016년도(50억 6,700만원) 대비 10% 감액됨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액 운영하였는 바, 초과수입 일부를 소송구조지원에 운영하여 소송구조 내실화를 기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대법원은 향후 소송구조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송구조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²⁾.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초과 수입이 주요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여유자금 운용으로 편입되어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기금 주요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대법원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여유자금 운용 집행액은 196억 4,600만원으로 계획(현)액 99억 3,900만원의 197.7%를 기록하여 2017년도 170.6%보다 증가하였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및 주요사업비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전체 기금	계획(현)액(A)	51,590	50,500	58,336
	집행액(B)	53,818	54,479	65,121
여유자금 운용	계획(현)액(C)	2,083	5,934	9,939
	집행액(D)	5,563	10,122	19,646
주요사업비	계획(현)액(E)	49,407	44,466	48,303
	집행액(F)	48,169	44,260	45,418
기금규모 대비 여유자금 운용비율	계획(현)액 기준(C/A)	4.0	11.8	17.0
	집행액 기준(D/B)	10.3	18.6	30.2
기금규모 대비 주요사업비 비율	계획(현)액 기준(E/A)	95.8	88.1	82.8
	집행액 기준(F/B)	89.5	81.2	69.7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획(현)액 기준 17.0%, 집행액 기준 30.2%로 2017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반면, 주요사업비가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획(현)액 기준 82.8%, 집행액 기준 69.7%로 2017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다.

2018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결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결산심사 시 국회가 제기한 시정요구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은 기금 주요사

2) 대법원은 관련 예규 개정(2018.1.1. 시행)을 통하여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19년도의 경우 계획액 기준으로 기금 규모는 745억 6,700만원, 여유자금 운용은 220억 200만원, 주요사업비는 524억 5,100만원으로, 여유자금 운용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3%, 주요사업비가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5%인바, 기금운용계획 상 여유자금과 주요사업비가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산출한 비중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매년 민간출연금(공탁출연금)과 정부예금 회수(여유자금 회수)에서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제기한 시정요구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연도 중 기금 주요사업에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정무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정무위원회 소관은 총 151건으로 시정 23건, 주의 56건, 제도개선 95건이며, 이 중 24건은 하나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24건이며, 조치중 27건으로 보고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정무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보증기금별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 등 7건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0	8	16	39	(5)	58	52	6
공정거래위원회	1	7	5	13	(4)	22	14	8
금융위원회	0	5	15	20	(4)	36	29	7
국민권익위원회	0	2	12	12	(10)	16	13	3
국가보훈처	0	1	8	11	(1)	19	16	3
합계	1	23	56	95	(24)	151	124	27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금융위원회	1	0	1
합계	1	0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보증기금별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금융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금융위원회 소관 3개 보증기금은 공급된 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기업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¹⁾하며, 이행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²⁾을 행사한다. 이 때 기금이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소송, 경매 등), 채무자면담 등 채권회수 활동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하게 된다.

2017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43.9%, 신용보증기금은 23.6%로 낮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2017년 사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구상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① 신용보증기금은 지적전산자료 등 유의성 있는 공공정보(213,519건)를 제공하여 회수 연계자료로 활용하였고, ②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회수실익이 낮은 부실채권의 채권관리센터 집중을 통하여 관리업무 효율성 강화 및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하였으며, ③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정보의 적극 활용을 통해 채권 회수를 강화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성실한 채무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구상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금융위원회 소관 3개 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지급 후 구상채권(특수채권 포함)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주신보계정 63.0%, 주연보계정 60.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31.5%, 신용보증기금은 14.5%로 낮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8조, 제43조의3
2)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기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로부터 같은 내용의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최근 5년 간 구상채권 회수율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하고 하락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014년 74.2%에서 2018년 31.5%로, 신용보증기금은 2014년 20.5%에서 2018년 14.5%로 하락하였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연도별 회수율이 누적 회수율보다 낮아 누적 회수율 역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간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 구상채권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기금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회수액	967	991	973	919	874
		회수율	74.2	64.2	66.1	43.9	31.5
		(누적)	(23.1)	(23.9)	(24.8)	(25.3)	(25.5)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회수액	379	459	150	119	45
		회수율	20.5	31.5	11.8	27.1	14.5
		(누적)	(32.9)	(33.0)	(32.8)	(32.8)	(32.8)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주신보 계정	회수액	1,679	1,969	1,908	1,405	1,179
		회수율	41.4	60.8	63.8	65.3	63.0
		(누적)	(41.9)	(43.4)	(44.8)	(45.8)	(46.5)
	주연보 계정	회수액	18	42	25	41	48
		회수율	78.3	120.0	55.6	128.1	60.0
		(누적)	(50.0)	(78.8)	(70.0)	(81.5)	(74.7)

- 주: 1. 특수채권회수액 포함
 2. 회수율 = 연도중 회수액 / 연도중 대위변제액
 3. 누적 회수율 = 회수액 누계 / 대위변제 누계
 4. 원리금 기준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구상채권 회수는 ① 기본재산의 유지 및 보증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② 구상채권 회수율이 하락할 경우 보증료 인상 및 신규보증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③ 성실한 채무이행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각 기금관리주체는 주어진 환경에서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회수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구상채권 회수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재원 축소방안 마련 필요(금융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2018년 여유자금 운용 평잔은 5조 7,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6,287억원 증가하였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수요 발굴, 보증료 인하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민·실수요자 보증지원 확대, 취약계층 특례보증 활성화,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료 인하 및 출연금 우대요율 확대 적용방안 마련 등 노력을 지속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증공급 확대 및 보증료율 인하 등 여유자금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2010년 1조 6,550억원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8년 5조 7,610억원까지 증가하였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 운용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운용규모	1,655	2,154	2,721	3,335	3,775	4,502	4,783	5,132	5,761
수익률	6.66	4.50	4.64	3.00	3.84	2.66	1.66	1.31	2.06

주: 1. 연중 운용평잔 기준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www.openfiscadata.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의 지속적 증가는 저금리 기조 및 주택경기 호조로 인한 보증부실률 하락으로 계획 대비 대위변제 지출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지출액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는 대위변제 계획과 지출액이 1,000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계획 대비 지출 추이]

(단위: 십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A)	171	167	398	285	310	330	386	399	296
지출(B)	212	222	261	434	408	328	303	218	195
차이(B-A)	42	555	△138	149	98	△2	△82	△181	△101

주: 계획은 당초계획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수요 발굴, 보증료 인하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여전히 여유자금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보임으로, 수입-지출 구조 개선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금융중심지 성과 제고 필요(금융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금융위원회는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법인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동법 제5조3)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4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이 시행 중이다.

2019년 현재 서울특별시(여의도)와 부산광역시(문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금융중심지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사업관리 미흡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 Index)⁴⁾가 2015년 서울 6위, 부산 24위에서 2018년에는 서울 27위, 부산 46위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Z/Yen 그룹이 City of London의 의뢰로 발표하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 측정지수이다.

① (정량지표) World Bank, OECD, IMD 등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5개 분야 평가

또한 2017년에 개최된 5차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중 3차례가 서면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서면회의 중 제31차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선정 심사 단 확장’건과 제32차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기관 선정’건 등의 의결사항이 각 위원에게 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찬반여부를 회신하는 서면방식으로 의결되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① 금융중심지(서울·부산)에 대한 적극적인 IR 개최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②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서면회의 방식을 지양하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대면회의 방식으로 심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① 금융중심지지원센터와 지자체 공동으로 금융중심지 해외 IR, 국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② 향후 중요 안건의 경우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첫째, 글로벌 금융경쟁력 강화 등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중심지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등 국제금융거래 규모의 변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계 금융회사의 유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 지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글로벌화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

영업환경	인적자본	인프라	금융부문 발전도	평판
정치적 안정성 및 관련법규 제도 및 규제 환경	숙련노동자 활용 가능성	유형 인프라	금융산업 집적의 넓이 및 깊이	도시 브랜드 및 매력도
거시경제 환경	고용시장 유연성	ICT 인프라	자본 조달 가능성	혁신수준
조세 및 비용 경쟁력	교육 및 발전 생활의 질	교통 인프라	시장 유동성	유인력 및 문화적 다양성
		지속가능성	경제 규모	타 도시대비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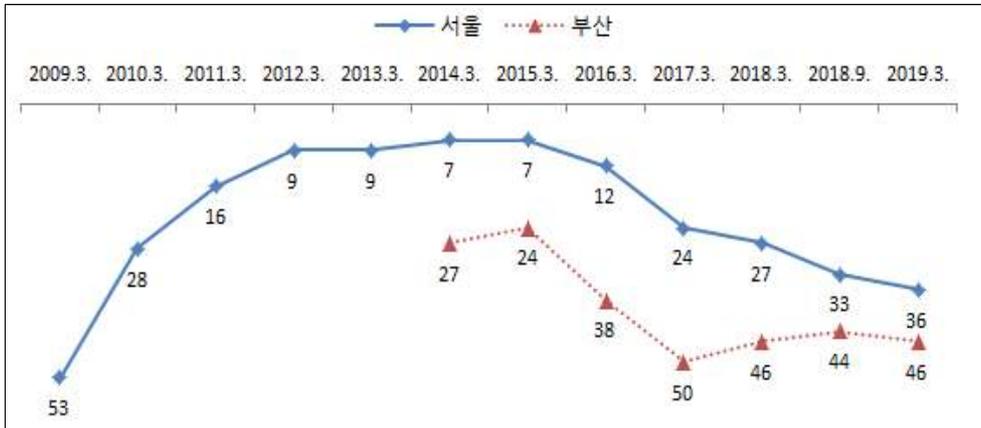
② (정성지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가 잘 알고 있는(familiar with) 금융도시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집 [10점 만점, 등간격 측도 활용: 1 = very poor, 10 = excellent]

① 우리나라 금융의 국제화 성과가 저조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발표한 「제4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에서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9년 3월 서울의 순위는 36위, 부산의 순위는 46위로 모두 하락하였는데, 특히 서울은 2015년 3월 7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여 2019년 29계단 하락한 36위에 불과하다. 이는 홍콩(3위), 싱가포르(4위), 상하이(5위), 도쿄(6위) 등 동아시아 지역 도시의 순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2009~2019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

[동아시아 도시별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2019.3.)]

순위	도시	순위	도시	순위	도시
3	홍콩	6	도쿄	29	칭다오
4	싱가포르	9	베이징	31	오사카
5	상하이	24	광저우	34	타이페이

자료: 금융위원회

해외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등 자본시장의 국제화 지표 역시 저조하다. 세계거래소연맹(WFE;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207개의 상장기업 중 해외기업은 21개(1.0%)에 불과하여 홍콩(154개, 6.7%), 싱가포르(259개, 35.0%), 타이페이(34개, 4.4%), 호주(142개, 6.6%)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②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4년 이후 36개의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철수를 하는 등 매년 외국계 금융회사의 철수 또는 영업 축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외국계 금융회사의 진입보다 철수가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회사의 집적을 촉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동 사업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철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외국계 금융회사 진입 및 철수 현황]

(단위: 개)

연 도	진 입	철 수	합 계
2014년	8	5	+3
2015년	9	7	+2
2016년	9	7	+2
2017년	7	10	△3
2018년	5	7 ¹⁾	△2
합 계	38	36	+2

주: 1) 사무소에서 지점·현지법인으로 전환(나틱시스은행, 초상증권)과 사명 및 통계 분류 변경(SIK자산운용, 에셋원자산운용), 사업부문 통합(HIP파이낸셜)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철수는 2개사(젠위스 모기지 인슈어런스,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가 해당

자료: 금융위원회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에서 매력적인 경영·생활환경 조성 및 금융홍보 내실화를 통해 외국계 금융사 유치·정착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금융중심지는 지역별 특화전략⁵⁾을 수립·추진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서울	종합 금융중심지로서 금융 인프라를 지속 구축함과 동시에 핀테크 산업 등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
5) 부산	해양·선박·물류산업을 활용하여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지역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전략 수립

그러나 2018년 서울 SIFC에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다수 입주하고 있으나, 부산 BIFC는 국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위주로 입주해 있으며, 외국계 기관은 비금융 기관 2개(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칭다오 공상센터⁶⁾)에 불과하여 외국 기관의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

[서울 SIFC 및 부산 BIFC 입주 기업 현황(2018년 말 기준)]

(단위: 개)

지역	구분		금융	금융지원 ¹⁾	비금융	합 계
서울	국내 기관	민간	31	23	16	70
		공공	0	0	0	0
	외국계		26	21	31	78
	소계		57	44	47	148
부산	국내 기관	민간	12	1	5	18
		공공	8	-	2	10
	외국계		-	-	2	2
	소계		20	1	9	30

주: 1) 회계, 컨설팅, 금융관련 IT기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외국 금융회사의 유치를 위해 매년 해외 IR(투자자설명회)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외 IR 이후 국내 진출 성과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그간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수행한 해외 IR은 2009~2018년 간 총 33건으로 13억 1,300만원의 비용을 해외 IR에 지출하였다. 이를 통해 총 34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2018년 말 기준 7개 기업만이 국내에 진출해 있으며, 특히 부산은 진출 실적이 전무하다. 향후 외국 금융회사가 해외 IR을 통한 MOU 체결 이후에도 국내에 진출하지 않는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부산에 진출하고자 하는 칭다오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서비스와 해외자본 투자유치, 정보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IR을 통한 외국계 금융회사 등과의 MOU 체결 현황]

연도	서울	부산
'09년	- 맥쿼리 그룹	- 칼리온(現 크레디아그리콜)
'10년	- CLSA - BNY Mellon	- Orbeo(탄소배출 관련 회사)
'11년	- 피델리티(피라미스) - 알라딘 캐피탈 - Legal&General Investment Mgt.	- 뉴욕 한인 경제인연합회
'12년	- 쓰레드니들 자산운용 - 허미스 자산운용 - 보세라 자산운용 - 아부다비 국립은행	
'13년	- 중국 국태군안증권 - ICICI은행 - Hastings 자산운용	- 중국 국태군안증권 - 부국기금 자산운용
'14년	- 호주 금융서비스협회 - ARGA자산운용 - BBCN Bank	
'15년	- ACR(아시아 캐피탈 재보험) - ENTIQ(핀테크 창업 컨설팅 업체) - FOSUN(중국계 금융투자회사)	- 차이나 유니버설(중국 자산운용사) - DNB(노르웨이 금융회사)
'16년	- Tyro Fintech Hub - ERA(벤처 핀테크 컨설팅 업체)	
'17년	- 파리 유로플레이스(파리 금융중심지 추진 단체) - 룩셈부르크 포 파이낸스(룩셈부르크 금융중심지 추진 단체) - 나틱시스(Natixis) - 마블스톤(싱가포르 투자기업)	- JIAM(일본 자산운용 국제화 추진단체)
'18년	- 프로스트앤설리번(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	

주: 굵은 글씨로 표시된 금융사가 2018년 말 국내에 진출한 기업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금융중심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⁷⁾에 따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7)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진위원회를 두고 금융중심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부위원(4명), 유관기관(6명), 민간위원(10명)⁸⁾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7회), 2017년(5회)을 제외하고는 매년 2~3회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그쳐 개최 실적이 미흡하다. 특히 2018년 개최한 3회 중 2회, 2017년 개최한 5회 중 3회가 서면회의로 실시되어 관계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간 논의를 통해 금융중심지의 발전 방안 및 성과를 심의하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원회 구성의 취지가 약화될 우려⁹⁾가 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회)

연도	본회의			분과회의			합 계
	출석	서면	소계	출석	서면	소계	
2014	2	0	2	0	0	0	2
2015	1	2	3	0	0	0	3
2016	1	2	3	4	0	4	7
2017	2	3	5	0	0	0	5
2018	1	2	3	0	0	0	3
2019.3.	1	0	1	0	0	0	1

자료: 금융위원회

특히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¹⁰⁾에서는 위원회를 효율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4.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민간위원은 대학 교수, 회계법인 대표, 은행 지점장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9)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서면회의 방식을 지양하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대면회의 방식으로 심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향후 중요 안건의 경우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10)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분과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2019년 6월 현재에도 분과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분과위원회는 주로 단기간 내 집중적인 심의가 필요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성·운영하였으며, 최근에는 집중 검토가 필요한 안건 보다는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이 주로 이루어져 전체회의 위주로 개최되었다는 입장이다.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 성과 저조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한 분과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판매장려수당 요율 변경 등 상품구조 재설계 필요(금융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¹¹⁾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6년 내집연금 3중세트¹²⁾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출시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 총액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¹³⁾하고, 동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가격 9억원 이하)의 소유자가 가입 가능하며,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는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 12) 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여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
 ②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만 40세 이상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약정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금리우대분은 60세 이후 연금 전환시점에 '전환장려금'으로 일시 지급)
 ③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1.5억원 이하로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존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5%(17년 17%)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
- 13)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한도를 연금지급한도(주택연금을 통해 100세까지 지급받게 되는 연금 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50%에서 70%까지 확대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2월부터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가 90%로 확대되었다.

기관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0.3~0.4%를 판매장려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판매장려수당 집행률은 30.3%에 불과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판매장려수당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주택연금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주택연금 공급 확대, 홍보 강화, 판매장려수당요율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9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판매장려수당 지출액을 감액 편성하고 주택연금 상품성을 제고하는 등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금융위원회는 판매장려수당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확대를 위하여 판매장려수당 요율을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판매장려수당 지급 건수는 840건으로 계획(1,714건) 대비 49.0% 수준에 불과하였다. 2016년(23.7%), 2017년(26.2%)에 비하여는 비율이 상승했으나, 실제 판매장려수당 지급액이나 전환 건수는 2017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다.

[2016~2018년 판매장려수당 지급 계획 대비 실적]

(단위: 건, 백만원, %)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건수	판매장려수당 지급대상		평균 상환액(B/A)	수당 지급액(C)	평균 지급률(C/B)
			건수(A)	금액(B)			
2016	계획	3,440	2,600	260,000	100	910	0.35
	실적	1,128	617	47,159	76	173	0.37
2017	계획	4,560	3,510	245,700	70	860	0.35
	실적	1,643	919	70,401	77	261	0.37
2018	계획	2,448	1,714	130,264	76	482	0.37
	실적	1,732	840	64,393	77	240	0.37
비고		-	금융기관 경유 공사접수 건		지급대상금액/ 지급대상건수	총 집행액	수당지급액/ 지급대상금액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외부환경 영향, 은행의 이자수익 감소 우려, 고객의 은행 상담 미인식의 사유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입장이다. ① 외부환경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입 보류, 가입자의 등록면허세 부담발생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당초 계획(16,040건)의 63.8%인 10,237건에 그쳤고, ②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 금리 간 격차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 등의 사유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시키는데 소극적이며, ③ 고객 요인으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에서 모두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상담고객은 공사만을 상담 창구로 인식하고 있어 전환 물량이 계획 대비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 중 ① 주택연금 가입 저조와 관련된 외부 환경 요인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고, ② 고객 요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홍보 강화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③ 은행의 역마진으로 인한 주택연금 전환 실적 저조 현상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제도의 재설계 없이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8년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3.39%, 주택연금 금리는 2.68%로 금리차가 0.71%p 수준인데 비해 판매장려수당은 상환액의 0.3~0.4% 수준에 불과하므로 은행이 판매장려수당을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이자수입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받기 어렵다. 자행 대출을 전환할 경우 2018년 평균 역마진 3,800만원과 판매장려수당 평균 지급액 2,000만원의 차액인 1,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은행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전환 상담에 응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판매장려수당은 자행전환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0.4%, 타행전환의 경우 상환액의 0.3%가 지급된다. 타행전환의 경우 주택연금 취급 은행 입장에서 타은행의 고객을 유인해 오는 것에 불과하지만, 자행전환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전환에 따른 역마진이 발생하는 등 은행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전환에 응할 유인이 낮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판매장려수당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주택연금 상품성 강화, 자행전환의 수당 지급 요율을 높이고, 타행전환의 수당 지급 요율을 낮추는 등의 제도 개선 등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기본경비에 대한 연례적 전용에 대한 주의 필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의 경우 국내여비 및 일반수용비 예산이 매년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되어 어느 정도 지출소요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액을 매년 과소계상한 후 초과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되었다

국회는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의 연례적 전용을 지양하고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2019년 예산 편성시에는 국내여비와 수용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1일 국내여비를 감액 지급하는 등 관련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예산 조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연례적 전용이 있는 세부사업과 무관한 기본경비 예산이 증액되는 등 2019년 예산편성에 있어 국회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2019년도 국내여비를 9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2018년 예산 7억 4,900만원보다 1억 6,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2018년 집행액(8억 8,400만원)을 감안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국무조정실 일반수용비를 보면 2019년도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8년 집행액 12억 9,300만원은 물론 2018년 예산 11억 5,7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추가적인 전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비서실은 매년 추가적인 이·전용 없이 계획대로 국내여비 및 일반수용비를 집행하고 있었는데 기본경비에 대한 국회 지적이 있는 후 2019년 예산을 증액편성(국내여비 2018년 6,500만원 → 2019년 1억 4,200만원, 일반수용비 2018년 4억 5,900만원 → 2019년 5억 8,000만원)하였다.

국회 지적사항과 무관한 기본경비 예산을 다른 비목의 감액 없이 증액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볼 수 없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부패신고자 포상금·보상금 지급관련 법정기한 준수(국민권익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부패신고자 보상 사업의 경우 부패신고자 보상 법정 기한이 90일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평균 처리기간이 211일(미처리 보상사건 102건)에 달하고, 연례적으로 보상금·포상금 예산부족분을 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사건의 평균처리기간 단축 및 적정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부패신고자보상 지급관련 법정기한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한 보상업무 수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년 7월 보상업무 전담과를 신설하였고, 2018년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도 전년 대비 71%(13억 7천만원)증액하여 보상금 지급지연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조치 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년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60일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법정기한인 90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60일로 2017년 211일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정처리기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7)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국가보훈처)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가보훈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연금대상자가 아닌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으

로 24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왔으나 집행액이 증가하여 2016년, 2017년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한편, 2017년 10월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2015~2018년 전직지원금 지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2015	2,407	△240	2,167	2,166
2016	2,407	659	3,066	3,056
2017	2,407	1,240	3,647	3,480
2018	2,407	1,125	3,532	3,529
2019	3,314			

자료: 국가보훈처

국회는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지원금 지급중단 사태나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2019년 전직지원금 지급인원을 현실화하여 예산에 반영(24억 700만원→33억 1,4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9년 전직지원금 예산액이 인상되었으나 2017~2018년 집행실적을 볼 때, 예산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전직지원금 예산이 33억 1,4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2017년, 2018년 예산집행액이 각각 34억 8,000만원, 35억 2,900만원이었다는 점, 전직지원금의 단계적 인상¹⁴⁾을 앞두고, 전직지원금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2019년에도 예산액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전직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문제와 예산 이·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의 집행 추세 등을 고려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전직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14) 중기 : (현재) 25만원 → (2020년) 50만원 → (2021년) 70만원, 장기 : (현재) 50만원 → (2021년) 70만원

5. 기획재정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114건으로 시정 28건, 주의 54건, 제도개선 35건이며, 이 중 3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02건이며, 조치중 12건으로 보고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집행 실적 부진’ 등 7건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기획재정부	15	29	22	3	63	55	8
국세청	7	9	2	0	18	16	2
관세청	4	6	3	0	13	13	-
조달청	0	6	5	0	11	9	2
통계청	2	4	3	0	9	9	-
합계	28	54	35	3	114	102	12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기획재정부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집행 실적 부진(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은 사업이 신설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을 제외하면 매년 집행률이 80.0% 미만으로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분기별 집행상황 관리 등을 통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분야별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활발하게 개최¹⁾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조치완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2018회계연도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30억 4,700만원 대비 78.1%인 23억 8,000만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2016~2017회계연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인 77.3%, 76.6%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 시정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 신설 또는 대규모 증액된 내역사업에서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례가 있었다. 2018년 정부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 안건 관련 연구 강화등을 위하여 정책연구비(260-02)를 전년도 2억 4,000만원 대비 100% 증액한 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집행실적은 59.2%인 2억 8,400만원에 그쳤다. 또한 경제정책분야 회의 신설을 위하여 연간 회의 12회 개최를 위한 예산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회의 개최 실적은 연말인 10월 23일 1건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회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집행실적 확대 및 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기존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규모를 계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분야별회의: '17년 10회 → '18년 47회
전문가 간담회: '17년 34회 → '18년 62회

(2)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특별회계예수금 수납실적 부진(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의 기타특별회계예수금은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 계획액 4조 7,669억원 중 3조 7,059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7.7%이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공자기금의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수입계획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과정에서 공자기금의 특별회계예수금 수입계획의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회계연도 공자기금의 기타특별회계예수금 징수실적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징수액이 계획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8회계연도 공자기금의 기타특별회계예수금 계획액은 당초 11조 997억 6,100만원이었으나 10조 8,849억 2,900만원으로 수정되어 9조 3,750억 7,400만원이 수납되었다. 2018회계연도 수입계획액 대비 징수율은 86.1%로 2017회계연도 77.7%에 비하여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징수액이 계획액에 미치지 못하여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

개별 특별회계의 수입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전망하기 어려운 측면은 인정될 수 있으나, 예수계획의 연례적 과다계상과 이에 따른 과소수납이 반복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유자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은 공자기금의 수입부족분을 국채 추가발행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보다 정확한 기타특별회계예수금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국세청 심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국세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세기본법」에서는 사후적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심사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친 후 제기하여야 한다.²⁾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다.³⁾

이 중 심사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세청장(심사청구)이 결정한다. 그러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는 평균 84일이 소요되었으나, 2016년 73일에서 2017년 99일로 26일(35.6%)이 증가하여 법정처리 시한 90일을 초과하였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사청구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사건별로 사전에 심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소액·단순한 사건은 조기에 결정하도록 하는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년 국세청의 심사청구 평균 소요기간은 100일로 법정기한을 도과하였다.

「국세기본법」⁴⁾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처리된 심사청구 369건 중 101건(27.4%)이 기한을 도과하여 처리되었으며, 평균 소요기간 역시 100일로 법정기한을 도과하였다.

「국세기본법」⁵⁾ 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2)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불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납세자는 조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정이 지연될 경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특히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 2016년까지는 평균 소요 기간이 법정기한 이내였으나 2017년 이후 법정기한을 초과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로부터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심사청구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음에도 2018년 평균 소요 기간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결정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고액소송 패소를 관리 필요(국세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납세자가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도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8년 1,543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469건이 처리되었는데 이 중 732건(49.8%)은 승소하였고, 170건(11.6%)은 일부패소 또는 패소하였다.

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6) 국세청은 최근 사건의 복잡화, 신종·변칙 유형의 탈세에 대한 과세 급증 등으로 심리의 난이도가 높아졌고, 실무적으로는 청구인의 요청 및 납세자의 항변권·진술권 보장 등의 사유로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결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납세자는 동 규정을 통해 해당 기한 내에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되므로 기한 단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연도별 행정소송사건 처리 실적]

(단위: 건)

	제기 건수	처리 건수	처리				
			취하	각하	국가승소	국기일부패소	국가패소
2009	1,258	1,482	465	51	805	47	114
2010	1,385	1,321	356	34	768	40	123
2011	1,697	1,627	545	72	851	55	104
2012	1,679	1,524	409	74	862	40	139
2013	1,881	1,545	485	53	799	60	148
2014	1,957	1,524	493	78	749	50	154
2015	2,026	2,036	788	225	786	86	151
2016	1,484	1,946	745	85	893	82	141
2017	1,466	1,842	691	81	860	74	136
2018	1,543	1,469	507	60	732	60	110

자료: 국세청

국회는 이에 대하여, 납세자의 고액 소송에 대하여 소송 빈도가 높은 세목과 과세표준 등 공통적인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고액·중요소송에 대하여는 본청의 소송지휘를 강화하고 필요시 소관국실·세제실 등과 협업하는 등 소송 대응 실효성을 제고하였다고 조치 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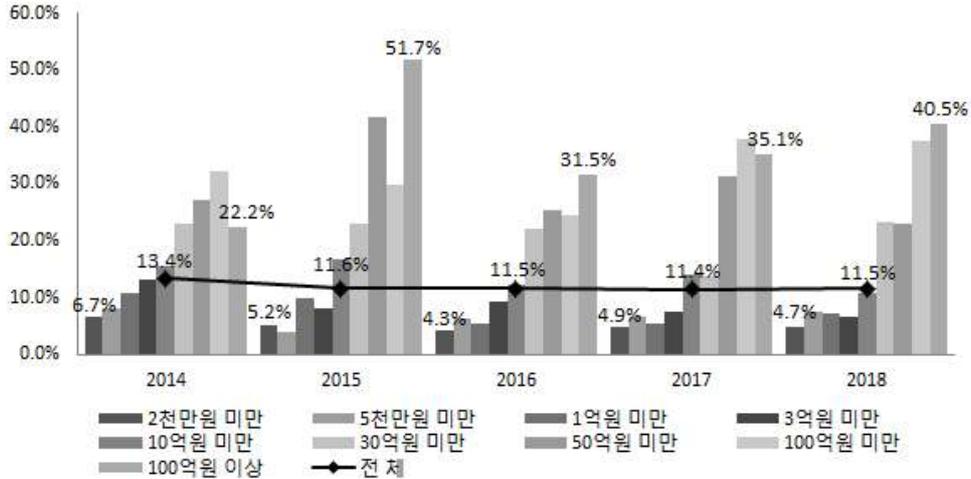
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이 높으므로 국세청은 패소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세 전 사전 검토 강화 등을 통해 패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1,543건,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된 건수는 1,469건이다.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건수 기준 170건(11.5%), 금액 기준 1조 624억원(26.6%)이다.

소송가액별로 살펴보면 소액 사건에 비해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높는데, 2018년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패소율은 4.7%에 불과하였으나 100억원 이상의 고액 사건 패소율은 40.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 이전 패소율 역시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소액 사건의 패소율보다 높았다.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패소율은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0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 패소율은 2015년을 제외하고 2014년 22.2%에서 2018년 40.5%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소송가액별 국가 패소율 추이]

(단위: %)



주: 1) 패소율은 일부패소와 전부패소 포함
 2) 건수 기준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특히 국세청은 행정소송 패소율(건수, 금액)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성과지표인 ‘행정소송 건수 패소율’과 ‘행정소송 금액 패소율’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법무심사지원 단위사업 사업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행정소송건수 패소율(%)	목표	10.3	9.6	9.36	9.36	직전 3년간 평균 패소율(9.4%) - 패소율축소노력	(전부패소+ 일부패소×0.5) /종결건수 ×100	조세소송 통계
	실적	9.3	9.4	9.5	-	{평균패소율(9.4%) - 달성가능 최소 패소율(9%)}×100%		
	달성도	109.7	102.2	98.5	-			
행정소송금액 패소율(%)	목표	신규	신규	19.1	21.79	직전 3년간 평균 패소율(19.4%) - 패소율축소노력	(패소금액/ 처리금액) ×100	조세소송 통계
	실적	16.4	24.3	26.6	-	{평균패소율(19.4%) - 달성가능 최소 패소율(16%)}×100%		
	달성도	-	-	60.7	-			

자료: 국세청

또한 당초 예상보다 높은 패소율로 확정채무지급 예산의 부족분 10억 9,800만 원을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2014년 이후 매년 예산의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배상금은 소요가 발생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성격의 경비로서 연례적 이·전용이 발생할 경우 타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소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확정채무지급 사업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4	1,912	1,912	697	2,609	2,609	136.5	0	0
2015	2,600	2,600	542	3,142	3,142	120.8	0	0
2016	2,600	2,600	432	3,032	3,032	116.6	0	0
2017	2,983	2,983	10,038	13,021	13,021	436.5	0	0
2018	2,928	2,928	1,098	4,026	4,026	137.5	0	0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확정채무지급 사업은 우발성이 크고 집행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최근 국제거래팀⁸⁾, 3심 전담·관리팀⁹⁾을 신설하는 등 소송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18년 패소한 170건을 패소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실 판단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패소가 133건(7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법원과의 사실 판단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과세 전 사전 검토 강화 등 국세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8) 국제거래 관련 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중부청에 4개 팀을 신설(2018.1.)하였다.

9) 대법원에 계류된 고액·중요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청에 2개 팀을 신설(2018.7.)하였다.

[패소 원인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법령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	108	99	104	81	33
사실 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93	122	118	121	133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2	16	1	8	4
소송수행의 잘못	1	0	0	0	0
합 계	204	237	223	210	170

자료: 국세청

(5) 국세상담센터 응답률 제고 필요(국세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세청은 세법 상담을 위한 국세상담센터와 ‘현금영수증,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 간소화 등과 관련된 상담을 위한 홈택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사업으로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홈택스 상담센터 운영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상담센터의 2017년도 전화상담 응답률이 61.6%, 홈택스상담센터의 응답률은 75.8%로 저조하였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국세상담센터의 낮은 응답률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집행률을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모든 상담수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 신고기간 및 세법개정으로 인해 폭증하는 상담 수요를 모두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상담률이 다소 저조하나, 정원확대 및 임시상담사 투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세상담센터의 평균 응답률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상담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시기별 응답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세상담센터의 2018년 평균 응답률은 세법 63%, 홈택스 70% 수준이다. 세법 응답률은 2017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홈택스 응답률은 전년 대비 5.8%p 하락하였다. 홈택스 응답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①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12월 66%, 1월 55%의 응답률을 보여 연말정산 기간에 응답

률이 저조하였고, ②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은 6~7월 응답률이 61~62%로 저조하였다. ③ 신고 납부 상담은 5월의 응답률이 35%로 가장 저조하였고, ④ 학자금 상환 상담은 5~6월에 상담 인입 건수가 많아 각각 69%, 59%의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⑤ 연말정산 간소화는 1월에 인입 콜이 집중되어 46%의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세법의 경우 2017년과 유사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홈택스 응답률은 2017년 76%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져 응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월에 전체 인입 콜의 66.2%가 집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분야 등의 경우 상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임시 상담사를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연중 고른 응답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 분야별 응답률 현황]

(단위: %)

구 분	2017			2018			
	평균	최저월	최고월	평균	최저월	최고월	
세 법	62	50	73	63	45	76	
홈택스 (위탁)	합 계	76	56	91	70	50	92
	현금영수증	88	65	97	78	55	94
	전자세금계산서	81	65	96	75	61	94
	신고납부	70	48	92	68	35	95
	학자금상환	77	46	97	78	59	97
연말정산간소화	60	29	98	53	42	91	

자료: 국세청

(6)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의 집행관리 필요 (관세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 및 불법물품 반출입 차단을 위하여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인천신항·부산신선대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사업 입찰참가자격 보완 등의 이유로 4차례의 입찰공고를 거치고,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 상의 미비점이 발생하여 납기일이 연기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10억 8,9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노후 컨테이너검색기 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규장비 도입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에 있어 계약자 사정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 예산 불용이 불가피하였고, 신규장비 도입에 있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7년 컨테이너검색기 납품 지연에 이어 2018년에도 기업의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계획되었던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2017년 도입 예정이었던 부산신선대터미널·인천신항의 컨테이너검색기는 당초 2018년 1월로 납기일이 1차례 연기되었으나 실제로는 5월에서야 도입이 완료되었다. 또한 2018년 도입 예정이었던 부산자성대터미널의 컨테이너검색기는 당초 계약된 기업의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컨테이너검색기를 도입하지 못하였고, 관련 예산 전액이 불용·이월되었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기 등 최신 장비를 통해 이로 인해 신속한 통관과 불법·위해물품 반입의 효과적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노후 컨테이너 검색기 교체가 지연됨에 따라 컨테이너검색기를 활용한 검색건수와 검색률이 2017년과 2018년 연속하여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3~2018년 컨테이너검색기 활용 현황]

(단위: 건, %)

세관	2014		2015		2016		2017		2018	
	검색수	검색률								
부산(5)	26,740	1.4	27,999	1.4	29,358	1.5	28,975	1.4	29,550	1.4
인천(3)	17,345	2.2	19,384	2.4	18,678	2.1	16,460	1.7	17,756	1.8
평택(2)	6,323	3.5	11,324	6.1	10,353	5.1	10,479	4.8	8,189	3.6
광양(1)	1,893	0.6	1,979	0.6	2,459	0.7	2,591	0.7	2,812	0.7
군산(1)	599	5.4	574	6.0	652	5.3	664	4.0	710	3.5
울산(1)	606	2.5	632	2.7	739	3.0	753	3.1	754	3.0
합 계	53,506	1.6	61,892	1.9	62,239	1.8	59,922	1.6	59,771	1.5

자료: 관세청

주: 2018년 부산 1대 감소(5→4), 인천 1대 증가(3→4)

따라서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기 등 첨단 검색장비가 계획대로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력, 경영안정성이 낮은 업체가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되지 않게 계약조건을 강화·정비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7)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 편성 문제(통계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년도 수입대체경비수입 예산은 20억 4,400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29억 6,500만원으로 예산 대비 45% 초과되었다. 2014년도 이후 연례적으로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초과수납이 발생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산의 연례적인 과소편성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근 수납실적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도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2017년도 수입대체경비 초과 수입은 대부분 지역통계 생산대행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지역통계 생산대행 사업의 경우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편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17년 대비 '18년 예산을 약 2억원 증액하여 편성(5.2억원 → 7억원)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지역통계생산대행 예산/집행 추이]

(단위: 억원)

	'17	'18	'19	'20
예 산	516	701	701	830(예정)
집 행	1161	897	-	

자료: 통계청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년에는 지역통계생산대행 사업 뿐 아니라 통계생산 및 개발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에서도 초과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지역통계생산대행 수입 예산은 7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억 9,600만원이 초과된 8억 9,700만원이 수납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수입 예산은 4억원 편성되었으나 26억 5,400만원이 초과된 30억 5,400만원이 수납되는 등 전체 수입대체경비는 예산 13억 7,500억원 대비 45억 1,7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 대비 수납률은 328.5%로 나타났다.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은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어 예산안 편성 시 수입을 과소 계상할 유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수입대체경비를 통한 초과지출은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서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예산안 편성시 통계생산대행의 수요조사 결과가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전 통계생산대행 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 희망통계의 3개 부처 각각의 세출사업예산요구금액은 31억 8,900만원(기획재정부 예산조정 후 29억 1,100만원)이었다.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예산(2,272백만원 예산요구, 1,994백만원 조정),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정책조사 예산(717백만원 예산요구),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기금) 산후조리실태조사 예산(200백만원 예산요구) 등이 각 부처에서 2018년도 예산안으로 요구되었다. 하지만, 통계청의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4억원만 반영되어 요구되었다.

[2018년도 통계생산대행 수요조사]

조사시기 및 회 차	수요제출기관	통계조사명	결 과
1차 (17년 2월)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행추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대행추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부적합 (모집단 미확보)
2차 (17년 5월)	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	부적합 (예산부족 등)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실태조사	부적합 (모집단 미확보)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실태조사	대행추진
	교육부	유아사교육비조사(연 2회 조사)	대행 요청 취소
3차 (17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대행추진
	방위사업청	국가별 군수품 수출입 통계	부적합 (예산미확보)
추가	국도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대행추진 (17 수행)

자료: 통계청

따라서 통계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최근의 수납 실적 고려 및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기초한 적정한 수입대체경비 예산 편성으로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회 시정요구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교육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 총 102건으로 시정 26건, 주의 26건, 제도개선 51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94건이며, 조치중 8건으로 보고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교부금의 연례적 이월 해소 필요’ 1건이다.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교육부	26	26	51	(1)	102	94	8
합계	26	26	51	(1)	102	94	8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교육부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교부금의 연례적 이월 해소 필요(교육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실집행률은 44.6%로 저조하며, 이는 2016년의 실집행률 31.6%에 비교하여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특별교부금 전체의 실집행률 77.8%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대전·전북·경남 등 3개 지역의 이월률이 90%를 초과하며, 전북의 경우 교부액 199억 3,6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다. 사업별로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756건의 사업 중 건수 기준으로 55.9%인 428건의 사업의 실집행률이 0%로 저조하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향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시 사업의 사전 준비 현황, 재원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재원확보 계획,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하고 집행을 독려하여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조기집행을 위하여 2018년 상반기 교부시기를 2월로 당겨 총예산의 70% 이상을 교부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교육부의 2018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실집행률은 14.8%로 전년 보다 29.8%p 하락하였다.

2018회계연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교부액 4,151억 중 615억원을 집행하고, 3,537억원을 이월하였다. 2018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실집행률은 전년 보다 29.8%p 하락한 14.8%를 기록하였다.

[특별교부금 실집행률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2016	교부액(A)	1,521,593	912,956	456,478	152,159
	실집행액(B)	901,428	751,614	144,169	5,645
	이월액(C)	620,165	161,342	312,309	146,514
	실집행률(B/A)	59.2	82.3	31.6	3.7
	이월률(C/A)	40.8	17.7	68.4	96.3
2017	교부액(A)	1,704,017	1,022,410	511,205	170,402
	실집행액(B)	1,325,749	997,580	228,236	99,933
	이월액(C)	378,268	24,830	282,969	70,469
	실집행률(B/A)	77.8	97.6	44.6	58.6
	이월률(C/A)	22.2	2.4	55.3	41.3
2018	교부액(A)	1,383,810	830,286	415,143	138,381
	실집행액(B)	915,989	811,215	61,483	43,291
	이월액(C)	467,809	19,070	353,660	95,079
	실집행률(B/A)	66.2	97.7	14.8	31.3
	이월률(C/A)	33.8	2.3	85.2	68.7

자료: 교육부

광주·세종·경기·충남·전북·경남·제주 등 6개 지역의 실집행률이 10% 미만이며, 세종의 경우 교부액 103억 6,7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제주의 경우 교부액 61억 7,1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다.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지역은 2017년 3개 지역에서 2018년 6개 지역으로 늘어났으며, 실집행률이 0%인 지역은 2017년 1개 지역에서 2018년 2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2018년 시·도교육청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시도	교부액(A)	실집행액(B)	이월액(C)	실집행률(B/A)	이월률(C/A)
서울	56,164	8,195	47,969	14.6	85.4
부산	25,277	7,669	17,608	30.3	69.7
대구	15,982	5,500	10,482	34.4	65.6
인천	21,253	4,326	16,927	20.4	79.6
광주	13,244	1,305	11,939	9.9	90.1
대전	13,793	2,488	11,305	18.0	82.0
울산	10,445	1,519	8,926	14.5	85.5
세종	10,367	0	10,367	0.0	100.0
경기	107,465	7,550	99,915	7.0	93.0
강원	18,708	2,401	16,307	12.8	87.2
충북	16,730	4,029	12,701	24.1	75.9
충남	21,478	1,592	19,886	7.4	92.6
전북	15,529	662	14,867	4.3	95.7
전남	19,517	3,013	16,504	15.4	84.6
경북	20,053	9,144	10,909	45.6	54.4
경남	22,967	2,090	20,877	9.1	90.9
제주	6,171	0	6,171	0.0	100.0
합계	415,143	61,483	353,660	14.8	85.2

자료: 교육부

이는 대부분 방학기간을 활용한 공사 집행, 추경예산 편성 및 대응투자 사업의 대응투자비 확보 지연 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연도말 교부 비중이 높기 때문이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11월 교부 비중은 교부건수 기준 40.0%, 교부액 기준 35.5%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연례적인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103건으로 징계 1건, 시정 20건, 주의 35건, 제도개선 48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87건, 조치중 16건으로 보고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1건이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달 탐사 사업’, ‘보험보상금 사업’ 등 2건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20	34	-	65	55	10
방송통신위원회	1	3	13	9	-	26	22	4
원자력안전위원회	-	6	2	5	(1)	12	10	2
합 계	1	20	35	48	(1)	103	87	16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0	1
합 계	1	0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 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우주원자력 분야 대형 R&D 사업 관리 강화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에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등 7개 대형 R&D사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 중 5개 사업은 사업 착수 후 총사업비나 사업기간이 변경되었다. 이에 결산 심사 시 국회는 총사업비 증가 및 사업지연 문제가 발생한 7개의 우주원자력 분야 대형 R&D 사업에 대해 향후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개 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전담평가단을 구성해 개발 일정을 관리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3개 사업은 적정성 재검토 및 건설허가 취득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치 중으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시정요구 및 사업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달 탐사 사업의 경우 2018회계연도 중 계약 지연 및 주관기관 내부 이견 등으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 요인이 발생하였다.

달 탐사 사업의 실행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예산현액 554억 700만원 중 523억 3,100만원이 집행되고, 30억 7,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2017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159억 700만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2018회계연도는 이월금 규모 면에서는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로 계획했던 심우주지상국 안테나 계약이 10개월가량 지연된 2018년 9월에 체결되었고, 2018년 9월에 완료 예정이었던 달 탐사 궤도선 상 세설계가 달 궤도선의 중량 증가와 이에 따른 예비연료 기준 설정에 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의 기술적 이견으로 2019년 6월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특별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 지연원인과 향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부 이견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기간연장, 추가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보험보상금 사업 조치결과 부적절(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 보험보상금 중 ‘부내자 포상금’에 대하여 타 사업 예산을 이용하여 지출하는 등 예산 편성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를 지양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직원보상금 지급률 조정 등 제도개선안을 수립한 것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시정요구 및 개선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용하여 부내자보상금을 당초 예산보다 초과 지출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국회 시정요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선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2018년 부내자보상금은 총 619억 24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 340억 1,1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부내자보상금 당초 예산편성 및 초과집행 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초과집행(B-A)	초과집행 재원
2016	46,927	69,399	22,47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지출 예정액에서 이용
2017	39,501	63,241	23,740	
2018	34,011	61,924	27,91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초과지출 규모가 2016년에는 224억 7,200만원, 2017년에는 237억 4,000만원, 2018년에는 279억 1,300만원으로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부내자보상금 지급 소요 금액보다 예산편성규모가 매년 작아 그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용을 통해 부내자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회의 시정요구를 감안하면 부내자보상금 지급률 조정 등을 통해 초과 지출규모를 축소하여야 했다.

따라서 2019년부터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및 예산편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률 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전용을 통한 부내자보상금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8. 외교통일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은 총 84건으로 시정 17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47건이며,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69건이며, 조치중 15으로 보고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조정문제 개선 미흡 등 4건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외교부	7	12	19	0	38	34	4
통일부	7	7	22	0	36	25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1	6	0	10	10	0
합계	17	20	47	0	84	69	1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외교부	1	1	0
통일부	0	0	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	0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무분별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조정문제 개선 필요(외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외교부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편성된 262억 2,900만원 중 총 17억 200만원을 당초예산편성과 달리 내역변경과 전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중 외교관 교체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이 14억 6,000만원이다.

이와 같이 외교관 교체여비 충당을 위한 과다조정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3-2017년 간 외교관 교체여비와 관련한 예산액과 집행액을 비교하면, 동일 기간 교체여비로 총 34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43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족액 86억 원을 기본경비 등에서 전용을 통해 조달하였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 편성에 있어 세목별 실집행을 고려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공관 직원 이·부임 관련 교체여비 등 부족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비를 증액하기 어려운 현실이나, 향후 자율적으로 내부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실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치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외교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외교관 교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전용 및 내역변경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집행을 고려한 세목별 예산편성 노력이 미흡하다.

외교부는 2018년에도 재외공관 직원교체 여비 부족분을 충당을 위해 총 18억 8,200만원 규모의 조정을 했으며, 이 중 전용규모는 17억 5,000만원이다. 2016년 15억원, 2017년 14억 6,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오히려 전용규모가 확대되었다.

내역을 보면 국제기구국과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국가외교통신 운영사업 경비,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사업 등에서 총 7억 3,100만원의 전용이 있었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각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해당 사업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특정 사업들의 예산액의 과다하게 전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직원 교체수요조사 결과와 전년도 세목별 실적행을 고려하여 외교관 교체여비를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재외동포재단 예산 내역조정 최소화 필요(외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사업, 교류지원사업, 조사연구사업, 차세대 사업, 한상네트워크 등이다. 예산 확정 이후 세계한인학술대회 부족액 총당(2억 7,000만원) 등에 총 5억 2,700만원의 내역조정을 하는 등 모든 세부사업에서 내역조정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에서는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예산 확정 후 내역조정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집행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내역조정 최소화 노력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018년도 재외동포재단의 결산내역을 보면 인건비 지급을 위해 한글학교육성 사업 및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의 기타운영비와 일반연구비에서 1억 5,600만원을 세목변경하였다. 그리고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사업 내 세부사업인 코리아넷 운영사업의 경비 등을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청년채용 인턴십 교육훈련비 실소요액 부족분 총당을 위해 조정하였으며, 조정 규모는 2억 7,000만원이다.

[2018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한글학교육성 사업	210-16	40	인건비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210-16	38	
자료실 운영	260-01	36	
	430-01	4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210-16	38	
코리안넷 운영	210-16	270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재외동포재단의 2018년도 예산조정 규모는 총 4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된 수준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특정 사업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억 7,000만원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조정 사유 역시 예산과 집행액 차이 발생이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 일례로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청년채용 인턴십 교육은 이미 사업경험이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계상이 가능한 성격의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23.5%에 해당하는 소요액 부족분이 발생하여 내역 조정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재단은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통해 내역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집행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강화 필요(통일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북한의 영아사망률이 남한의 7.6배이고,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27%가 영양 결핍상태이며, 북한의 결핵환자수는 약 13만명 수준으로 남한의 3배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2018년 8월 6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만큼 통일부는 적극적인 역할로 대북지원 분위기를 이끌어야 하나,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경우 2017회계연도 기준 집행률이 0.6%로 저조하였다.

국회는 이와 관련하여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집행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 조치를 취하여 국내민간

단체 및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며, 대북제재와 무관한 국제기구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통일부는 이에 대하여 남북관계 상황 등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도 북한영유아 지원 사업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통일부는 동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과 규모로 지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계획현액 2,404억 9,600만원 대비 26억 6,1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쳐 집행률 1.1%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북한영유아 지원 사업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다.

2019년 6월 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WFP 및 UNICEF에 대한 800만불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였고, 6월 19일자로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금 공여가 완료되어 일부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계획액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 북한측과의 합의 문제, 비핵화 진전과 연계된 대북제재 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으로 당국 간 직접 지원, 국제기구 또는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생협력지원 사업도 대북지원 사업의 하나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강화되어 온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등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통일부는 동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과 규모로 지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국내·해외 출범회의,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 참석률 제고 필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의 2017년도 각종 회의 참석률을 살펴보면, 국내 출범회의의 참석률은 16기 61.1%, 17기 60.1% 18기 48.1%이고, 해외 출범회의의 참석률은 16기 76.1%, 17기 75.6%, 18기 68.1%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으며,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법정위원회와 지역회의 참석률도 낮아졌다.

특히 해외 자문위원은 해외 거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통일 의지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나 참석률이 낮아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자문위원의 위촉요건 변경 및 자문위원 인원 조정 등 실질적인 참석률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이며 자문위원 본연의 생업이 있어 참석률 제고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자문위원 위촉 시 참여 의지가 높은 인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의일정 사전공지 및 콘텐츠 보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참석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내지역회의 등 주요 회의 참석률이 여전히 저조하며,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노력도 미흡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18년도에 실시한 제18기 국내지역회의에는 총 15,753명의 국내자문위원 중 9,525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은 60.5%로 나타났고, 해외지역회의에는 총 3,600명의 해외자문위원 중 1,528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은 42.4%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내지역회의의 경우 참석률이 제16기 63.0%, 제17기 64.8%에 비해 저조한 측면이 있으며, 해외지역회의의 경우에도 참석률이 제16기 53.9%, 제17기 51.0%, 제18기 42.4%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자문위원의 주요 회의 참석률 저조 문제에 대한 국회의 연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참여마일리지 제도는 기존의 출결관리에 불과하고 자문위원들의 참여마일리지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²⁾ 등에서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로서 부적절하며, 실효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향후 자문위원들의 참여도가 제고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외교통일위원회 2012회계연도 결산 ‘주요 회의 참석률의 제고 필요’, 2014회계연도 결산 ‘민주평통 주요회의의 참석률 제고’, 2015회계연도 결산 ‘출범회의 참석률 제고’, 2016회계연도 결산 ‘회의 참석률 개선을 위한 방안 필요’, 2017회계연도 결산 ‘국내·해외 출범회의,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 참석률 제고 필요’
2) 예를 들어, 연임을 원하지 않는 자문위원의 경우 참여마일리지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9. 국방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총 65건으로 시정 19건, 주의 26건, 제도개선 20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44건이며, 조치 중 21건으로 보고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 충원을 통한 군무원 인력 운영률 제고’ 등 3건이다.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방부	9	15	12	0	36	29	7
병무청	0	3	6	0	9	6	3
방위사업청	10	8	2	0	20	9	11
합계	19	26	20	0	65	44	21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 충원을 통한 군무원 인력 운영률 제고(국방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방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군무원의 평균 인력 운영률(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은 95.9%로 연례적으로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정원의 증가 없이도 인원을 선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군무원 340명을

증가시키려 하였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 추경예산안이 삭감되어 실제 반영되지는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교육·행정·군수부대의 부사관을 야전으로 전출하고 군무원을 채용해 부사관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경우 군무원 소요가 증가하여 부족인원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현재의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여 인력운영률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의무군무원 증원 등 현재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부터 충원하여 인력운영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향후 병력 감축에 따른 국방부의 간부 및 군무원 충원계획을 제출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2018년에는 82% 수준인 군무원 채용률을 향상시켜 군무원 충원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비인력(예상공석) 채용 확대, 공채/경채 미선발 직위의 연내 임기제 전환 채용, 채용관련 홍보강화 등을 통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 하겠으며, '20~'24 중기 부대계획에 따라 '19년도 충원계획을 제출 완료(증원직위: 4,736개)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년도 군무원 채용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며, 군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중 임용 포기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군무원 충원률 제고를 위해 채용 정원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국방부의 조치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2018년도 국방부의 군무원 채용 계획인원 1,287명 대비 실제 채용인원은 1,104명으로 채용률은 85.8%으로 나타나 여전히 채용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이 최근 5년간 17.6:1 수준에서 31.7:1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합격자 중 실제 임용 비율은 같은 기간 94.5% 수준에서 88.1%로 감소하여 군무원 채용시험 합격자의 타 시험 중복합격 시 임용 포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군무원 충원률 제고를 위해 채용 정원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국방부의 조치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타 시험 중복합격 시 군무원 임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군무원 처우 개선 등 채용 증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연도별 군무원 임용 현황(2014~2018년)]

(단위: 명, %)

연도	계획인원(A)	응시인원(B)	경쟁률(B:A)	합격인원(C)	임용인원(D)	임용률(D/C)
2014	1,063	18,742	17.6 : 1	823	778	94.5
2015	1,295	18,544	14.3 : 1	1,055	1,001	94.9
2016	1,184	29,671	25.1 : 1	991	941	95.0
2017	1,048	35,034	33.4 : 1	878	868	98.9
2018	1,287	40,815	31.7 : 1	1,253	1,104	88.1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군무원 인력 확대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부서관(하사, 유급 지원병)의 적기 충원 대책 마련 필요(국방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방부는 <국방개혁 수정 1호>에 따라 상비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군 인력을 간부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부서관 정원을 증원하였는데,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실제 운영인력은 정원대비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하사의 인력운영률은 80%에 불과하고, 유급지원병은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하사, 유급지원병 등 부서관의 적기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동일하게 개선하여 지원동기를 제고하고, 장기복무 희망시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 개선(복무 기간을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방부가 유급지원병 운용률 저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은 지속적인 효과 달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향후 유급지원병 운용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3차에 걸쳐 추진되는 병 봉급 인상을 고려할 때 유급지원병 급여 상향이 가지는 상대적 가치가 저하된다는 점, 기존 유급지원병 정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던 유형-II의 경우 장려금이 수당으로 변경되었을 뿐 급여 인상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¹⁾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의 조치가 유급지원병 운용률 상승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병 봉급 인상 및 유급지원병 급여 상향(2019.1.1.) 내용 비교]

구 분	인상 전	인상 후	인상률(%)
병 봉급 (병장 기준)	216,000원(2017년)	405,700원(2018년) → 540,900원(2020년) → 676,115원(2022년)	213
유급지원병 급여 (유형-I) ¹⁾	하사 기본급(3호봉 1,475,000원) + 장려수당(350,000원) = 1,825,000원	하사 기본급(3호봉 1,643,000원) + 각종수당(807,000원) = 2,450,000원	34

주: 1) 유형-II의 경우 보수체계 변경으로 장려수당이 일반수당으로 변경되었을 뿐 인상 전에도 총 급여는 일반하사와 동일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유급지원병이 장기복무를 위해 복무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더라도 장기복무 선발률이 저조하다면 복무기간 연장을 선택할 유인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유급지원병 장기전환 현황을 보면 유급지원병 중 장기복무 선발률이 평균 9.2%에 불과한 상황이다.²⁾

- 1) 국방부는 2019년부터 유형-I, II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용하므로 유형-II에 대한 인급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유급지원병 운용률은 신규 선발자뿐만 아니라 기존 유급지원병도 포함하여 산출되는 수치이고 제도 개선책은 기존 유급지원병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급여 인상이 기존 유급지원병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형이 통합되었다고 하나 특성화고 인원들(기존 유형-II로 선발)의 경우 제도 개선에 따른 급여 인상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의 장기복무 선발률 개선을 위해 장기복무 지원 시 유급지원병 복무기간만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유급지원병 장기전환 현황]

(단위: 명, %)

구 분	유급지원병 복무 전환 현황		
	유급지원병 선발	단기하사 전환	장기복무 선발(선발률)
2016년	4,846	1,322	407(8.4)
2017년	4,662	1,728	369(7.9)
2018년	4,699	1,606	529(11.3)
계	14,207	4,656	1,305(9.2)

주: 해당 년도 선발된 인원 기준

자료: 국방부

더욱이 국방부 스스로 유급지원병의 운용률 저조 문제에 대해 보수뿐만 아니라 어려운 군 복무환경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 만큼, 복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³⁾

국방부는 유급지원병 제도 개선 이후 2019년 5월말 기준 운용률이 63.1%로 전년 대비 약 17.9%p 상승하였고, 유급지원병 및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19.1.28.~2.8)를 실시한 결과, 유급지원병 중 복무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인원이 70%, 병사들 중 유급지원병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17.5%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향후 급여 인상 등 제도 개선이 가지는 긍정적 영향의 지속성 유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보수 인상 등 유급지원병 제도 개선책 시행 이후 유급지원병의 운용인력 증감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운용률 개선이 미진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자항기뢰 사업(방위사업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자항기뢰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장보고 잠수함(KSS-II/III)에 탑재하여 필요시 적 주요항구에 부설하여 항만봉쇄하는 자항기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성능미충족, 시설사업 지연 등으로 관련 2017년 예산 10억원 전액을 불용하였다.

3)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이 하사로서 복무함에도 “병”으로 호칭됨에 따른 사기 및 복무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신속하게 자항기뢰 양산에 착수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시설공사와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를 사전에 마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2018년 초도양산 계약 체결, 시설공사 협의 완료 등을 수행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자항기뢰 사업은 시설공사 및 양산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 집행률이 낮은바, 현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항기뢰 사업의 2018년 집행액은 152억 2,600만원으로 예산액 344억 2,600만원의 44% 수준이다.

[2018회계연도 자항기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항기뢰	34,426	34,426	0	△16,932	17,494	15,226	240	2,027
주장비	31,855	31,855	0	△16,932	14,923	14,923	0	0
시설공사	2,499	2,499	0	0	2,499	233	240	2,027

주: 자항기뢰 사업 내에는 주장비, 시설공사 예산 외에 종합군수지원, 간접비 예산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방위사업청

우선 시설공사 사업은 자항기뢰 보관시설을 위한 것으로, 설계 계약이 11월 체결됨에 따라 공사비 14억원, 건설보상비 6억원 등 약 20억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시설사업 진척 정도 및 소요군 성능확인(야전운용시험) 계획, 탑재 잠수함 전력화 일정, 초도양산 지체상금 상한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여 주장비 사업은 자항기뢰사업 계획 변경(일괄양산→초도 및 후속양산)으로 예산액 169억원이 타 사업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장비 전력화시기는 당초와 동일하게 2019년부터 진행되나, 전력화 완료 시점은 당초보다 약 2~3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방위사업청은 자항기뢰 전력화시기가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 행정안전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총 108건으로 시정 56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18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93건이며, 조치중 15건으로 보고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총 4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3건,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연수원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적정한 예산편성에 의한 초과지출 최소화 필요’ 등 3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6	5	(0)	17	17	0
행정안전부	2	22	16	(1)	40	31	9
인사혁신처	1	9	3	(0)	13	11	2
경찰청	4	9	13	(0)	26	23	3
소방청	1	6	5	(0)	12	11	1
합계	56	15	18	(1)	108	93	1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0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1	1	0
행정안전부	1	0	1
소방청	1	1	0
합계	4	3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연수원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적정한 예산편성에 의한 초과지출 최소화 필요(행정안전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연수원수입대체경비는 지방 핵심인재의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수입대체경비사업으로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수입으로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생의 규모가 예산 편성 기준보다 클 경우 초과지출승인이 발생한다.

국회는 연례적으로 초과지출 승인이 발생(2014년 7억 9,600만원, 2015년 17억 7,100만원, 2016년 18억 9,800만원, 2017년 13억 2,800만원)하고 있고, 수입대체경비가 「국가재정법」 제53조¹⁾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어 연도 중에 국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이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과도한 예산 증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해 초과지출승인 금액이 최소화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1)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2016년도부터 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확대²⁾하고 초과지출 규모³⁾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기재정계획부터 적정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초과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행정안전부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규모의 감소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회계연도 초과지출이 발생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역시 초과지출이 예상된다.

초과지출이 발생하는 원인인 연도별 예상교육인원과 실제교육인원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실제교육인원이 예상교육인원보다 많았고 특별한 사유로 교육인원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2019년의 경우에도 예상교육인원보다 실제교육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도별 예상교육인원과 실제교육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상교육인원 (A)	6,537	6,433	6,843	7,184	7,264	7,482
실제교육인원 (B)	7,611	6,815	7,412	8,294	8,010	-
예측 차이(B-A)	1,074	382	569	1,110	746	-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초과지출 감소를 위한 예산증액이 전년대비 2017년 7억 6,100만원, 2018년 4억 2,0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 1억 2,900만원으로 예산증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산현액 증가추이를 고려할 때 2019년에도 약 8억원 가량의 초과지출이 예상된다.

2) 2016년 53억 1,900만원 → 2017년 60억 8,000만원 → 2018년 65억원 → 2019년 66억 2,900만원

3) 2015년 17억 7,100만원 → 2016년 18억 9,800만원 → 2017년 13억 2,800만원 → 2018년 9억 7,200만원

[연도별 초과지출승인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5,496	5,308	5,319	6,080	6,500	6,629
예산현액	6,292	7,079	7,217	7,408	7,472	-
초과지출 승인액	796	1,771	1,898	1,328	972	-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액을 증액하여 연례적인 초과지출승인액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2) 신임경찰관 교육인원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경찰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신임경찰관 교육인원에 대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신임순경교육 사업에서 여유재원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전용재원으로 활용되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동 사업의 예산현액 205억원 중 급량비 16억 5,200만원 등 총 28억 8,200만원이 이전용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경찰청이 신임경찰관의 실제 교육 인원의 추계를 면밀히 실시하여 여유재원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관련 기능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 예상 인원을 면밀하게 분석·예측하여 예산편성 인원과 실제교육 인원 간 차이를 최소화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경찰청은 인력 증원 규모와 채용 시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임순경 교육인원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회계연도 신임순경교육사업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회계연도 동 사업의 예산액 230억 3,400만원 중 186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0.9%에 그쳤고, 특히 예산액 중 11억 8,000만원은 타사업으로 전용집행되었다. 이는 경찰청이 당초 예산 편성 시 신임순경교육 대상인원을 6,000명으로 산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4,6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산편성 인원과 실제 교육 인원간에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018회계연도에도 신입경찰관 교육 예상 인원과 실제 교육인원의 차이로 인한 여유재원 발생과 이에 따른 타사업으로의 전용집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청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신입순경 교육인원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정규 채용을 통한 전문의료인력 충원 노력 필요(소방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의료인력 정원은 5명(전문의 4명, 간호 1명)이나, 2018년 5월 기준 현원 1명(전문의 1명)인 상황으로, 의료인력의 장기간 결원 및 이직으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내 의료전문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인력 자격요건 완화, 채용된 인력에 대한 전문의료 교육 지원 등 충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인력(전문의 4명) 충원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4명 중 2명은 소방청·서울대학병원 간 인사교류를 통해 충원된 인력이므로, 소방청은 정규 채용을 통한 의료인력 충원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내 의료인력은 총 4명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내 의료인력 현황]

	임용일자	자 격	채용방법
1	2018.06.25	응급의학전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2	2018.09.03	응급의학전문의	소방청·서울대학병원 간 인사교류
3		응급의학전문의	
4	2018.11.01	응급의학전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19.5)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전문의 4명 중 2명은 소방청·서울대학병원 간 인사교류⁴⁾에 의해 파견된 단기근무(2년) 인력이라는 점에서, 당초 국회가 지적한 ‘안정적인 전문의료인력 충원방안 마련’이라는 시정요구 취지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전문의료인력 정규 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총 84건으로 시정 56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18건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71건이며, 조치중 13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기존 체육시설의 이용이 저조한 상태에서 신규 시설을 건립하는 문제’, ‘낮은 공연연습장 가동률과 운영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집행 부진사업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등 3건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문화체육관광부	48	6	14	(0)	68	57	11
문화재청	8	4	4	(0)	16	14	2
합계	56	10	18	(0)	84	71	13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기존 체육시설의 이용이 저조한 상태에서 신규 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문화체육관광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기초 지자체마다 건립되었으나 접근성 미비 등으로 이용률이 낮은바, 접근성 강화 등 기존 시설의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에 대한 각 지자체 등의 고민이 없는 신규 시설건립 위주의 사업추진은 문제가 있고,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운영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 및 체육회 인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신규 체육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 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률 제고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운영위원 선정 시 지자체 공무원 및 체육회 임·직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선정 시 스포츠클럽 등 민간에서 위탁참여 협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신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인원)을 개선할 계획이고, 기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국민체육센터 운영 실태조사 연구비를 반영하였으며, 실태 조사를 토대로 이용률을 분석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방안을 평가지표로 마련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선정 시 스포츠클럽 등 민간에서 위탁참여 협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신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인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의 평가지표에는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여건(입지여건, 수요확보), 사업계획의 타당성(시설 및 규모의 적정성, 재원투자계획, 부지 확보여부), 사업 준비성(관리운영 계획, 안전관리 역량, 지역주민 의견 수렴,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2019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공모(2019.1.11.~2.8., 4주간 접수)에 따른 심사(2.27.) 결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12개소가 계획대비 초과 신청됨에 따라 탈락된 국민체육센터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2019.4.25.)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2017년 결산 시정조치에 대한 국민체육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방안을 평가지표로 마련하였음에도 평가지표에 의한 선정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모든 지자체에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을 계획하는 등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것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선정지표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체육센터 관리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낮은 공연연습장 가동률과 운영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문화체육관광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공연연습장 가동률이 낮아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6년차부터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연습장 조성 후 6년차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운영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당해 연도 조성지 신청 및 선정 시 연차별 운영비 차등 지원에 대해 안내하여 모든 공연연습장에서 숙지하고 있으며, 6년차부터 자체 재원 마련을 추진 중이며, 지역별 공연연습장 가동률 향상을 위해 연습장 통합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전체 공연연습공간 가동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연습공간의 경우 30%를 밑도는 곳도 있는 바, 공연연습공간의 가동률 제고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공연연습공간 가동률이 낮아 국가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연습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가동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하였으나, 2018년에도 일부 공연연습장(춘천, 울산, 광주, 강진, 포항)의 경우 가동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연습장 전체 평균 가동률이 49.37%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공연연습공간 가동률 현황]

구분	대구	부산	청주	춘천	서울	부천	인천	전주	창원	울산	광주	강진	포항
대관시작(일)	01.01											07.02	12.19
가동일(일)	296	296	294	291	250	296	294	296	296	298	294	55	9
연습공간수(개)	5	4	4	5	1	4	2	4	3	3	2	3	5
대관건수(건)	2,457	2,612	2,190	1,997	342	2,026	1,066	1,865	1,584	766	670	141	10
이용단체수(개)	471	147	199	101	13	79	65	137	37	85	66	5	6
사용인원(명)	44,008	37,008	41,331	44,950	5,258	49,806	13,406	29,674	43,738	8,751	10,000	3,063	106
가동률(%)	55.00	73.54	67.75	45.75	68.40	57.03	60.40	52.50	59.50	28.56	38.00	28.00	7.41
평균가동률(%)	49.3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습공간에 대한 통합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공연연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연습공간의 경우 가동률이 낮아 정부의 운영비 지원(조성 후 6년)이 중단될 경우 운영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공연연습공간 조성 사업은 2014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2014년도에 5개 지역, 2015년에 3개 지역, 2016년에 3개 지역, 2017년에 3개 지역을 조성하여 2018년 말 현재 1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022년까지 공연연습공간 25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므로 공연연습공간 가동률 제고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집행 부진사업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문화재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고도 보존 및 육성,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사업 등 4개 지자체·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하고, 직접사업인 칠백의총 시설 관리운영 사업도 집행이 부진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직접 사업 및 보조사업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①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은 고도 지정지구 확대 사업대상지역 확대(17.12월) 및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다양화(지자체 직접사업 확대) 등 집행 부진 개선방안을 수립(18.1월)하여 실집행률(이월예산 포함)이 2017년 45.9%에서 2018년 205.6%로 개선되었고, ②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은 박물관 건립 부지 등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협의 매수가 지연되었으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고시 후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박물관 건립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③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은 대체부지 선정 완료(18.11.), 설계변경 후 연구시설 건립을 재추진할 계획이고, ④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은 지자체 예산요구내역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철저 검증 및 사업의 적정·부적정 검토의견 명확히 작성토록 내역사업 담당부서에 안내(19.1.16 시행)하였으며, ⑤ 보조금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부서 내역사업 담당자간 회의 개최

및 집행률 부진사업 대상 매월 집중 현장점검 실시 협조 요청(19.1.28.)하고, 직접사업과 보조사업 실행률 개선을 위해 예산의 편성, 집행 각 단계별로 검토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문화재청은 2017년 결산 시정요구에 지적된 사업 중 2018년 결산 결과 일부 사업에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집행률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의 2018년도 결산 결과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5억원)’ 사업은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되었고,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32억 9,600만원)’ 사업은 전액 불용되었으며,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271억 9,700만원)’ 사업은 예산액의 32.09%인 87억 2,7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실행 실적 개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2018년에도 ‘무형문화재보호’ 사업의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예산(62억 7,000만원)의 37.59%인 23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산(40억 5,600만원)의 16.86%인 6억 8,4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실행이 부진한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유형문화재관리’ 사업의 3.1운동 100주년기념 항일독립운동 유물특별전 예산액(2억원)도 전액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 보수 시 발생하는 사업 지연의 불가피성은 일부 인정되나, 건립부지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 점검이 부실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시 집행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총 136건으로 시정 25건, 주의 23건, 제도개선 88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16건이며, 조치중 20건으로 보고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해양사고 예방 대책 마련’,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연례적 실집행 부진 개선’ 등 6건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농림축산식품부	10	11	42	(0)	63	54	9
해양수산부	12	3	24	(0)	39	33	6
농촌진흥청	0	5	6	(0)	11	11	0
산림청	0	2	13	(0)	15	10	5
해양경찰청	3	2	3	(0)	8	8	0
합계	25	23	88	(0)	139	116	20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권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농림축산식품부	1	1	0
해양수산부	0	0	0
농촌진흥청	0	0	0
산림청	1	1	0
해양경찰청	0	0	0
합계	1 ¹⁾	1	0

주: 1)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집계에는 1건으로 계산하였다.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부적절한 성인지 예산 분류 주의 필요(농림축산식품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 시 활기찬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사업의 수혜 여부가 성차별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국회는 이에 대하여 성인지 대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게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시, 성인지 목록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제외 요청했으며, 2020년 성인지 대상 사업에서는 사업 선정 시, 성인지 예산의 성격이 아닌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에도 활기찬농촌프로젝트를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활기찬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사업은 우수한 인력 및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활력

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동 사업의 수혜 여부는 남녀차별이 아닌 지역의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특정의 성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저조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활기찬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지구를 단위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수혜자를 남녀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성인지 대상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추진사업의 성인지 대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게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에도 활기찬농촌프로젝트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사업은 2016~2018년 추진된 시범사업으로 2018년 종료 예정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시정요구가 즉각 반영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에도 활기찬농촌프로젝트를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한 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예산의 축소편성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2014년 47.6%, 2015년 52.9%, 2016년 63.9%, 2017년 58.6%)하였으며, 2017년부터 예비사업자 선정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도포기율이 전년보다 증가(8%→15.8%)하는 등 사업 추진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을 개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적기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추진하여 실집행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사업자 선정 시 2단계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9년부터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중도포기를 예방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개선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2018회계연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416억 6,900만원 중 369억 9,900만원을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등 보조사업자는 전년도 이월액(115억 6,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85억 6,800만원 중 38.8%인 188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128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8억 7,600만원은 불용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 일정의 순연 등으로 인해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시설원에 분야에 대한 투자심리가 저하되고, 낮은 국제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사업수요가 감소하여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초기 투자비(8.8~14억원/ha) 부담 등으로 사업 중도포기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미집행이 발생한 것도 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¹⁾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을 조사한 뒤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및 자부담의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해양사고 예방 대책 마련(해양수산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해양사고 예방활동 사업의 집행률은 97%로 높은 수준임에도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는 선박 안전교육 강화 및 선박 안전 관련 제도 마련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해양안전 교육 예산을 확대(18년 대비 '19년 8억원 증액)하였고,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18.4)하고, 교통량이 많은 연안해역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고 소형선박 음주운항과 기초 항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18.10.18 및 '18.12.31)이 이루어졌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해양안전체험관 및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2018년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 대비 증가하였다.

국회는 선박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2018회계연도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예산 50억원과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예산 57억 3,800만원은 각각 경기도와 진도군에 전액 교부된 후 전액 이월되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및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은 각각 2015년, 2016년 예산부터 반영되었으나,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 심의·의결이 2017년 4월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었다. 당초 계획은 각각 2018년, 2019년에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 6월 현재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 및 시행과 「해사안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해양사고는 2,671건으로 2017년 대비 89건(3.4%) 증가하였다.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돌	180	235	209	258	250
접촉	19	28	23	25	20
좌초	96	84	137	149	142
전복	35	32	49	65	46
화재/폭발	97	100	113	96	119
침몰	19	31	27	29	38
기관손상	339	703	755	838	856
안전사고	113	144	131	160	162
부유물감김	205	331	390	311	278
운항저해	-	-	-	131	155
해양오염	-	-	-	-	80
기타	227	413	473	520	525
합계	1,330	2,101	2,307	2,582	2,671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사고현황」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체험관 및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생분해성어구 보급 활성화(해양수산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의 예산편성액은 46억 500만원이나, 61.4%에 해당하는 31억 6,600만원만을 집행하고, 12억원을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다.

국회는 동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생분해성어구의 성능에 대한 어민들의 불신 때문임을 지적하며, 생분해성어구 성능 향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어민들을 대상으로 생분해성어구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여 생분해성어구 보급을 활성화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을 분기별로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생분해성어망협회에 홍보 및 자체교육 역할을 부여하며, 어업인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년 생분해성어구 보급 실적은 401척으로 2013~2017년 평균(394척)과 비교하여 개선 정도가 미흡하고, 실집행률 역시 60.4%로 저조하다.

동 사업의 2018년 지자체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교부액 52억 중 34억 9,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0.4%로 전년대비 8.4%p 하락하였으며, 충청남도(0.0%)와 제주도(19.1%)에서 집행률이 특히 저조하였다. 생분해성어구 보급 실적은 총 401척으로 2017년대비 27척(7.2%)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이 높지 않고, 2013~2017년 평균 보급 실적인 394척과 비슷한 수준이다. 생분해성어구 보급 업종은 총 6종으로 2017년과 같은 수준이며, 대게자망이 371척으로 92.5%로 편중된 구조를 보인다.

[2018회계연도 생분해어구 보급 사업의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주체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강원도	273	585	858	645	18	195	75.2
경상북도	3,287	0	3,287	2,653	0	634	80.7
경상남도	125	0	125	110	0	15	88.0
충청남도	1,055	0	1,055		755	300	0
제주도	460	0	460	88	0	372	19.1
합계	5,200	248.2	5,785	3,496	773	0	60.4

자료: 해양수산부

[업종별 생분해성어구 보급 실적]

(단위: 척)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게자망	254	277	322	327	326	405	337	371
붉은대게자망	22	23	21	25	27	16	6	6
붕장어통발	5	6	2	-	6	10	6	6
꽃게통발	55	40	-	-	-	6	5	-
물메기통발	-	-	6	1	7	9	-	-
참조기자망	-	-	-	6	3	18	-	8
대구자망	-	-	-	-	-	9	-	-
가자미자망	11	4	5	7	10	3	-	-
문어통발	-	-	-	-	-	4	19	9
옥돔자망	-	-	-	1	1	-	-	-
병어자망	-	-	8	3	-	-	-	-
물메기자망	-	-	-	-	-	-	1	1
합계	347	350	364	370	380	480	374	401

자료: 해양수산부

(5)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 손실보상금의 적정예산 확보 필요(농촌진흥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은 당초 편성된 손실보상금 25억원 보다 많은 34억 6,8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의 적정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주 발생지역, 우심지역, 주산단지 중심으로 중앙·지자체 합동 예찰 및 사전방제 추진 하고, 농업인 준수사항 교육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 사용을 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2018년에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지자체 합동예찰과 약제살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또한 2019년의 경우 2018년 예산(2,502백만원)대비 238.2% 증가한 2019년 손실보상금 예산 95억 8,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예찰 및 예방을 더욱 강화하여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농촌진흥청은 2018년에도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을 통해 과수화상병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6억 7,200만원을 타 사업에서 이·전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예산 집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와 반경 100m이내에 위치한 농가의 과수 등을 매몰하고 있고²⁾, 매몰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6개 지역 135개 농가(80.2ha)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등 22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8년 농촌진흥청의 손실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221억 7,400만원이었으나, 당초 편성된 예산은 25억 200만원에 불과하여 196억 7,200만원을 이·전용하여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발생에 대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예측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대규모의 이·전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발생지 반경 100m 이내)의 과수는 뿌리째 뽑아 구덩이에 넣고 식물의 중간과 상단부에 생석회를 살포한 후 흙을 복토하여 매몰한다.

(6)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중 지자체 보조사업 연계적 실집행 부진 개선(산림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의 예산현액 621억 2,9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나,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은 48.0%로 저조하였다.

국회는 임업인 등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추진절차 등을 교육하고, 중도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지자체별 실집행 부진 사유를 유형별로 조사하고('18.6), 지자체 행정 지도('18.1, '18.5, '19.1) 및 분기별 현장점검('18.4, '18.7, '18.10, '18.12)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 대상 시책교육 시 사업포기자 발생에 대비한 예비 추가사업자 선정을 독려('19.2)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년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중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은 47.6%로 연계적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 지자체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29억 6,000만원 중 252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7.6%이며, 부산(12.8%), 전북(34.1%), 제주(40.0%) 등의 실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행정절차 지연, 시설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 추진 지연,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자체 업무대행의 어려움 등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사업시행주체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향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교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보조사업자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부산	39	39	39	0	39	5	13	21	12.8
인천	10	10	10	0	10	10	0	-	100.0
세종	300	300	300	0	300	300	-	0	100.0
경기	1,807	1,807	1,807	0	1,807	1,089	658	60	60.2
강원	5,075	5,075	5,075	0	5,075	2,213	1,653	1,209	43.6
충북	8,759	8,759	8,759	0	8,759	5,307	2,308	1,144	60.5
충남	8,029	8,029	8,029	0	8,029	3,952	1,227	2,850	49.2
전북	9,622	9,622	9,622	0	9,622	3,282	4,746	1,594	34.1
전남	6,886	6,886	6,886	0	6,886	3,213	2,964	709	46.6
경북	6,786	6,786	6,786	0	6,786	3,152	2,714	920	46.4
경남	5,390	5,390	5,390	0	5,390	2,599	1,743	1,048	48.2
제주	257	257	257	0	257	103	-	154	40.0
합계	52,960	52,960	52,960	0	52,960	25,225	18,026	9,709	47.6

주: 자치단체경상보조와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의 합계
자료: 산림청

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은 총 130건으로 시정 7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103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28건, 조치중 2건으로 보고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 전력거래가격 예측 정확도 제고 필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5건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산업통상자원부	5	16	54	(0)	75	73	2
중소벤처기업부	1	3	35	(0)	39	39	0
특허청	1	1	14	(0)	16	16	0
합계	7	20	103	(0)	130	128	2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산업통상자원부	1	0	1
합계	1	0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 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의 전력거래가격 예측 정확도 제고 필요(산업통상자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계획액이 당초 2015년 15.7%, 2016년 24.6%, 2017년 15.8% 증가하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의 연례적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전력거래가격에 대한 추정방식을 수정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전년도 네 개 분기 SMP의 가중평균(4:3:2:1)값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의 전력거래가격 예측 방식을 개선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¹⁾ 2017년까지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전년부터 최근 세 개 분기 SMP²⁾를 가중평균(5:3:2)한 값으로 전력거래가격을 예측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SMP 가격의 변동폭 상승에 따라 전력거래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 추정되어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 예산의 불용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증액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수요 및 유가변동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전력거래가격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은 2018년 계획현액 3,892억 600만원 중 3,561억 7,000만원이 집행행되고, 266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4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다. 불용은 전력거래가격이 2016년 77.06(원/kWh), 2017년 81.77(원/kWh)에서 2018년에 95.16(원/kWh)으로 상승하면서 발전차액지원금이 축소되어 발생하였다.

1) 기존 전력거래가격 예측 방식에 따르면 2020년 계획액의 경우 2018하반기 SMP 50%, 2018년 상반기 SMP 30%, 2017년 하반기 SMP 20%로 가중평균한 SMP값을 적용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정요구 조치결과에 따른 새로운 전력거래가격 예측방식에서는 2020년 계획액은 2018년 4분기 SMP 40%, 2018년 3분기 30%, 2018년 2분기 20%, 2018년 1분기 10%로 가중평균한 SMP값을 적용하게 된다.

2) SMP(System Marginal Price)는 전력계통한계가격으로 전력생산에 참여한 발전기별 발전가격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산출된다.

동 사업의 지원규모는 고시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이에 전력거래량을 곱하여 산출된다. 전력거래가격이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을 경우 발전량 당 지원금에 과소 또는 과다 산출되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계획액이 부족하거나, 증가하여 불용이 발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가격의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과거 기금운용계획수립 전년도와 전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전력거래가격을 예측하던 것에서, 기금운용계획수립 전년도 전력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기금운용계획수립에 필요한 전력거래가격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변경된 전력거래가격 예측방식에 따라 경우 2020년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의 전력거래가격 기준치는 96.81kWh로 도출되며, 여기에 지원대상 발전소의 전력거래량을 곱하여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산출된다.

[전력거래가격 예측 방식 변경에 따른 2020년 기준값 추정치]

(단위: kWh, %)

	2018 1분기 평균	2018 2분기 평균	2018 3분기 평균	2018 4분기 평균	2020년 전력거래가격 예측값(가중평균값)
SMP	94.82	89.42	90.39	105.81	96.81
가중치	10	20	30	40	

자료: 전력거래소 홈페이지(2019.7)

2018년 전력거래가격(SMP)은 유가상승 등에 기인하여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19년 4월부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2019년 6월의 전력거래가격(SMP)은 78.54kWh로 전년도 6월의 89.79kWh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력거래가격(SMP)이 계속하여 하락하거나, 2018년 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될 경우, 2020년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은 전력거래가격과 지원기준인 고시가격의 차이가 커져 사업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³⁾

2018년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승에 따라 전력거래가격과 고시가격의 차이가 감소하여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였지만, 2020년에는 반대로 차이가 커져서 예산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회는 전력거래가격 예측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7년에 전력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것을 시정요구

3) 동 사업은 고시가격 보다 전력거래가격이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정요구에 따라 전력거래가격 예측 방식을 변경하였지만, 2018~2019년 전력거래가격의 변동 추이를 볼 때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과거 전력거래가격 뿐만 아니라 유가변동, 제조업가동률 등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전력거래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가격 예측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8~2019년 월별 SMP가격]

(단위: kWh)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92.23	90.75	101.47	90.91	87.64	89.79	87.27	91.02	92.87	102.36	105.11	109.95
2019	111.28	105.85	112.42	99.44	79.65	78.54	-	-	-	-	-	-

주: 통합SMP가격 기준

자료: 전력거래소 홈페이지(2019.7)

(2)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의 보조금지급 요건의 사전검토 필요(산업통상자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에서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중 2017년 불용된 머크연구소 지원 예산(1억원)은 내부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편성되어 이월되었고, 2017년에 결국 불용처리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유치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경제자유구역청별로 산재한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가이드’ 정비 및 담당자 집합교육을 강화하였고, 예산편성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유치 가능성, 추진 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조치완료라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년에 유치할 계획이었던 에버딘대학교는 개교를 철회하였고, 스탠포드 연구소는 개소가 지연되고 있으며, 광양만권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사업이 중단되었다.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의 2018년도 당초 계획은 뉴욕주립대(FIT), 에버딘대, 스탠포드연구소, 독일 FAU 유체역학연구소에 초기운영비를 지원하고, 광양만권 유치초등학교 건설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에버딘대는 교육부의 학교 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 재정지원 문제, 학생모집 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2018년 5월 개교를 철회하였고, 스탠포드연구소는 개소가 지연되어 초기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였으며, 광양만권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2억 7,500만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조사업에서 불용액 규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투자유치가 확실시되는 사업을 선별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 자펀드결성 지연 반복(중소벤처기업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실제 투자유치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의 경우 추경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펀드 선정기간 및 투자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자펀드조성 및 투자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추경예산을 통한 일부 자펀드 결성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자펀드가 결성된 시점과 해당 자펀드의 투자현황을 보면,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2018.5.21. 본회의 의결)된 후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년 2월 20일에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었고, 전체 15개 자펀드 중 7개가 2019년에 결성되었을 만큼 일부 자펀드 조성이 지연된 사례가 반복되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예산을 통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실적행률 개선 미흡(중소벤처기업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실적행률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실적행률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는 한편, 다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단년도에서 다년도(2년차)로 변경하여 당해 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한편, 전년도 집행실적 50% 미만 시군구에 대해 다음연도 지원제한 명문화 및 주차장 신설공간이 부족한 도심지역 등에 지하주차장을 허용하여 토지확보의 용이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실적행률은 전년보다 더욱 하락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2018년말 기준 실적행률(예산현액 대비 실적행액)이 32.0%(2016년과 2017년 각각 58.7%와 51.3%)로 전년보다 오히려 하락하여 실적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하여 지방비 확보 지연, 주민민원과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 등에 따라 실적행 부진이 심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4)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을 조사한 뒤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음에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국제특허심사지원 사업의 과다한 예산 불용(특허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특허청 특허심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제특허심사지원 사업에서 외국 PCI(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 의뢰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조사 물량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의 정확한 예측 및 물량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국내단계 진입 시 심사청구료 감면 비율 확대(30% → 70%) 및 영문 국제조사료 인하(130만원 → 120만원)하였고, PCT 국제조사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원인이 온라인상에서 국제조사 결과를 쉽게 확인하고, 서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PCT 물량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므로 조치완료라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우리나라 특허청에 대한 PCT 의뢰 건수가 2018년에 전년대비 감소하여 PCT 조사료 수입도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대한 외국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가 2014년 17,718건에서 2018년 9,651건으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710건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한국 특허청에 대한 PCT 현황(2014~2018년)]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내국출원	12,442	13,579	15,016	14,798	16,264
외국출원	17,718	14,889	12,888	10,361	9,651
미국	17,162	14,480	12,491	9,992	9,119
합계	30,160	28,468	27,904	25,159	25,915

자료: 특허청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특허청의 조치 결과에도 불구하고 PCT 의뢰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의뢰건수의 정확한 예측 및 물량확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대한 외국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의 감소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불용을 야기하고, 특허청의 PCT 조사료 수입을 감소시킨다.

[최근 5년간 한국 특허청 PCT 조사료 수입]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내국	7,457	7,839	8,289	8,096	8,808
외국	22,723	19,793	16,575	13,315	12,443
합계	30,180	27,632	24,864	21,410	21,251

자료: 특허청

따라서 특허청은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외국 PCT 국제조사에 대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PCT 국제조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14. 보건복지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83건으로 시정 11건, 주의 59건, 제도개선 119건이며, 이 중 6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66건이며, 조치중 17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 등 5건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보건복지부	10	52	104	(6)	160	143	17
식품의약품안전처	1	7	15	(0)	23	23	0
합계	11	59	119	(6)	183	166	17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실적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실질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이 없어 공사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실질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질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전 설치 수요 조사 문서시행 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설치비 국고보조금이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보조금배부 및 집행 시 안내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설치비 국고보조금이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보조금배부 및 집행 시 안내하였으나 2018년으로 재이월된 예산을 2019년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하였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며 2회계연도 초과 이월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강원도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보조금은 2016년 교부된 후 2017년으로 이월, 2018년으로 재이월되었고, 2018년에도 사업이 지연되어 원주시는 보조금의 2회계연도 초과 이월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조금 집행 시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며, 설치비 국고보조금이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의무지출사업인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예산의 부정확한 추계로 인하여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국회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연례적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조 449억원(19.5%)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국고 기준 6,69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도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다.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인 6,695억원에 달하고 있어 조치완료 보고는 적절하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13년 1,400억원, 2014년 165억원, 2015년 2,389억원, 2016년 1,899억원, 2017년 2,243억원, 2018년 3,043억원의 재정절감액을 통해 필요 금액보다 감액 편성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을 제외하고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533억 2,900만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매년 발생하는 미지급금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킨다. 의료급여는 1인당 진료비 증가 및 보장성 강화 등으로 매년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미지급금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3) 정신보건시설 확충 사업 실행률 부진(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정신보건시설확충 사업의 실행률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7억 4,800만원 중 22억 2,5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13억 9,400만원이 실행되어 실행률은 37.2%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조금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동 사업의 실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유보액 범위 내에서 사업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방비 확보를 독려하여 2018년 집행률이 개선되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추가 검토 필요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실시 (2018년 11월) 등, 2019년도 사업계획 사전 검토 강화, 분기별 집행 현황 점검 및 정상 추진 독려, 집행부진 시설 대상 현지점검 실시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 예정이라 밝히며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액 34억 8,400만원 중 34억 4,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98.8%을 기록, 집행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입장이나 실집행률은 개선되지 않았다.

2018회계연도 정신보건시설확충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4억 8,400만원 중 34억 4,3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15억 2,5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은 43.8%를 기록하였다. 동 사업의 2017년도 실집행률은 37.2%를 기록하여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2015년도 실집행률 39.3%, 2016년도 실집행률 45.1%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국가보조금 교부와 집행에 있어 그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실제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여, 교부된 34억 4,300만원 중 19억 1,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 신중을 기해야 할 뿐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4)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14억원이 전액 불용되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향후에는 절차 지연으로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의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한 구축비 산출 확정을 2018년 6월 완료 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2018년 7월 중 총사업비 확정예정이라 밝히며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2017년과 같이 예산 전액을 불용시키지는 않았으나, 2018년도 예산을 전액 이월시켜 또 다시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다.

2018회계연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8억 2,200만원 전액 집행되었으나, 실집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2018년 6월에 완료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확정이 2018년 7월 이루어졌다. 익월인 8월에 예산이 교부되었으며, 국내 외 사례가 없는 대규모 음압병동의 구축 지원을 위해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였으나, 조선대병원의 감염병동 부지 사용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교부한 28억 2,2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국내외 사례가 없는 대규모 음압병동 구축이므로, 설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교부한 예산의 이월까지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7년도 예산도 전액 불용된 바, 2018년도 예산 집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5) 과태료 및 과징금의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및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과태료 및 과징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각각 28.4%, 50.9%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연례적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세입 결산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고 예측가능한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징금 체납자 재산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및 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한 재산 압류, 징수전담반을 통한 방문 독촉 등 징수점검 추진, 징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미수납 과태료 결손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2019년 예산 편성 시 최근 징수결정액 및 결산액 등을 반영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도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장기 체납건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수납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 과태료 및 과징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각각 31.6%, 29.7%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전년 대비 3.2%p 소폭 증가하였으나, 과징금은 전년 대비 Δ 21.2%p 감소하여 수납률이 크게 낮아졌다.

과태료의 경우, 5년 이상된 장기 미수납건이 59%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가산금의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수납이 장기화되는 경우, 수납이 더 어려워지게 되므로, 소액 장기 체납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징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특정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에 대한 수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 결과에 따른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태료 및 과징금의 장기 체납건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수납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5. 환경노동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총 159건으로 시정 21건, 주의 39건, 제도개선 99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48건이며, 조치중 11건으로 보고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총 4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2건, 조치중 2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필요’, ‘산재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 축소 검토 필요’ 등 4건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환경부	8	22	46	(0)	76	73	3
고용노동부	10	8	48	(0)	66	59	7
기상청	3	9	5	(0)	17	16	1
합계	21	39	99	(0)	159	148	11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환경부	1	1	0
고용노동부	3	1	2
합계	4	2	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필요(환경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7.7%로 낮은 수준이며, 그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39.3%) 및 수질배출부과금(12.5%)의 수납률이 저조하였다. 또한, 법정부담금 미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2017회계연도 기준 3조 3,674억원) 등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납부의무승계 및 출자자·사업양수인 등 제2차 납부 의무를 신설하고 자동차 이전·말소를 등록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등 체납액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신용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부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체납자의 사업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회계연도 법정부담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47.5%로 저조한 수납률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며, 재활용부과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일부 부담금을 제외한 법정부담금의 전년 대비 수납률이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다.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비롯하여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 총량초과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등 기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법정부담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한 47.5%이며,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역시 2014년 49.9%에서 2018년 47.5%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4	967,300	967,300	967,300	1,844,892	919,726	95.1	49.9	892,317	32,948
2015	867,000	867,000	867,000	1,886,717	942,357	108.7	49.9	904,749	39,611
2016	803,748	803,748	803,748	1,717,864	809,546	100.7	47.1	853,670	54,647
2017	816,910	816,910	816,910	1,622,878	773,690	94.7	47.6	806,296	42,892
2018	792,441	792,441	792,441	1,525,751	724,827	91.5	47.5	753,452	47,472

자료: 환경부

또한, 2018년 법정부담금의 유형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38.6%, 수질배출부과금은 12.1%, 수질개선부담금은 69.3%, 생태계보전협력금은 64.5%로 수납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부과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제외한 법정부담금의 전년대비 수납률이 감소한 실정이다.

[2017년 및 2018년 법정부담금 수납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전년대비 수납률 증감 (c-c')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C=B/A)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c=b/a)	
환경개선부담금	1,181,247	464,247	39.3	1,097,302	423,633	38.6	△0.7
대기배출부과금	10,777	8,300	77.0	9,715	7,181	73.9	△3.1
수질배출부과금	66,220	8,305	12.5	72,505	8,804	12.1	△0.4
재활용부과금	35,415	17,588	49.7	31,922	22,616	70.8	21.1
폐기물부담금	195,195	191,374	98.0	186,693	182,734	97.9	△0.1
수질개선부담금	21,554	15,257	70.8	21,685	15,035	69.3	△1.5
생태계보전협력금	96,646	61,412	63.5	91,591	59,090	64.5	1.0
기타부담금	15,825	7,206	45.5	14,338	5,734	40.0	△5.5

자료: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미수납액 과다는 세외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한 법정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미수납금의 장기화에

따른 불납결손은 채납자들의 납부 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채납 업체 징수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지자체의 징수 독려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제고 필요(환경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은 국고와 민간투자를 합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환경부는 정부출자금을 “Seed-Money”로 하여 민간투자자금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17년 12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환경계정에 출자되어 최종적으로 투자조합이 결성되었으며, 현재 타 모태펀드 계정과 비교할 때 자펀드 조합수가 1개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미래환경산업펀드 사업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운용사의 투자방향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명확하게 확정하여 불필요하게 투자조합 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운용사 모집 공고를 2개월 이상 앞당겨 '18년에는 2월달에 1차 공고를 조기에 실시하였으며, 우수 운용사를 유치하기 위해 펀드운용사 대상 환경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18.8.29.)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환경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의 운용사 선정과 투자조합 결성 등 사업 추진과정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면밀한 사업추진을 통해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의 연도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1차 펀드는 6월 운용사가 선정되었으나, 운용사 측의 잠재투자처 변경, 민간자본 유치 지연 등으로 인해 12월이 되어서야 펀드가 결성되었고, 실제 투자는 2018년 4월에 최초로 이루어졌다.

[미래환경산업펀드 투자 현황(2019년 4월말 기준)]

구분	펀드 예산 출자일	운용사 모집공고	출자심의 위원회 심의	운용사 선정	투자조합 결성	투자일
2017년 (1호 펀드)	'17.4.28	'17.4.27 ~'17.6.7	'17.6.27	'17.6.28	'17.12.13	'18.2월 ~진행중
2018년 (2호 펀드)	'18.5.29	'18.2.21 ~'18.9.7	'18.6.15 '18.10.10	'18.10.12	'19.4.30	'19.5월 ~진행중
2019년 (3호 펀드)	미출자	'19.1.31~ '19.2.27	-	-	-	-

자료: 환경부

특히, 2018년도 정부 예산 130억원이 출자된 2차 펀드의 경우, 2018년 2월 운용사 선정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미신청 및 투자실적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선정이 3차례 지연되었고, 4차 공고 후 10월 운용사가 선정된 후 '19년 4월말이 되어야 투자조합이 결성되었다.

[미래환경산업 2호 펀드 운용사 선정 경과]

구분	공고일	경과
1차	2018.2	신청사 없음
2차	2018.5	1개사 지원 → 2차 심의 탈락
3차	2018.7	1개사 지원 → 1차 심의 탈락
4차	2018.8	3개사 지원 → 운용사 최종 선정('18.10월)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는 2017년 사업이 추진된 이후, 펀드 관리기관 선정과 투자조건 합의 지연, 운용사 선정의 지체, 민간자본 유치 및 투자조합 결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각 단계별로 사업 추진과정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1·2차 펀드의 투자 운용사 선정 및 투자 조합 결성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9년도 본예산으로 추진 중인 3차 펀드 또한 연내에 실제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면밀한 사업추진을 바탕으로 운용사 선정 및 투자 조합 결성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출자금이 유망한 환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산재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 축소 검토 필요(고용노동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재정수지 1조 9,817억원 흑자가 발생하였으며, 누적적립금이 15조 8,470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매년 납입된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여유자금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산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료를 인하(18년 1.8%→19년 1.65%) 및 급여정수액 상한선 신설(18.12월)로 사업주 부담 완화하고,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노동자 입증책임 완화, 산재신청 및 치료지원, 직장복귀지원 확대, 산재보상범위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마련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에도 불구하고, 산재기금 내 재해예방 사업의 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산재기금의 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산재기금 재정수지는 2조 442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산재기금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수지 흑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흑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도 증가하여, 2015년 11조 8,990억원에서 2018년 17조 8,91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A)	66,350	71,135	72,895	79,951	84,486
지출(B)	49,727	51,473	53,078	59,509	59,807
재정수지(A-B)	16,623	19,662	19,817	20,442	24,679
누적적립금	118,990	138,653	158,470	178,912	203,591

주: 1. 연말적립금=전년도 연말적립금+당해연도 재정수지

2. 2014~2018년은 결산 기준, 2019년은 당초 계획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따라 산재 발생 이후 보장성 강화에 대해 사업을 확대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기금 지출 중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에서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재해예방 사업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금으로 전체 기금 지출액의 8.3%가 지출되었으나, 2015년 10.6% 이후 2016년 9.8%, 2017년 9.5%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해예방에 따른 지출은 2015년 4,133억원에서 2018년 3,582억원으로 감소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금은 2015년 1,167억원에서 2018년 1,33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해예방에 따른 지출의 비중은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산재기금 재해예방 사업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기금 지출 총액(A)	49,846	51,694	53,129	59,256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재해 예방)에 따른 용도(B)	4,133	3,877	3,768	3,58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C)	1,167	1,220	1,278	1,336
비중(B+C/A)	10.6	9.8	9.5	8.3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기금은 재해 발생 이후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산재기금 내 재해예방 사업의 다변화 등을 통해 산재기금의 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 체험관 관람객 수 감소 대책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한국 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관이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매년 지속적으로 관람객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전체관람객은 2013년 838,093명에서 2017년 689,693명으로 148,400명(△17.7%) 감소하였고, 특히 주요 사업대상인 청소년 관람객수는 2013년 489,587명에서 2017년 375,104명으로 114,483명(△23.4%) 감소하였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청소년의 직업 체험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방안 및 최신 직업컨텐츠 개발, 체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청소년 관람객 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8년 경기교육청 지역 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숙련기술체험관 건립 및 미래직업 랩 개관, 기존 체험실 리뉴얼 등으로 청소년 관람객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관 관람객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 시 적정 수준의 자체수입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관 관람객 인원은 666,968명으로, 전년(689,693명) 대비 22,725명(△3.2%) 감소하였다. 주요 사업대상인 청소년 관람객 수 또한 364,875명으로, 전년(375,104명) 대비 10,229명(△2.7%) 감소하였다.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관 관람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관람객 수	777,070	717,154	752,100	689,693	666,968
청소년관	441,964	402,762	404,898	375,104	364,875
어린이관	300,501	287,647	316,431	291,328	281,456
관람	34,605	26,745	30,771	23,261	20,637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체험기관의 경우, 민간에서도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수 운영 중이며, 교육부에서도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인증하여 공고하는 등 다수의 서비스 공급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잡월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체험관에 시설운영비를 지급하여 체험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¹⁾ 이를 고려할 때, 한국잡월드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민간 직업체험시설과의 차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입장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잡월드 자체 수입은 당초 예산(155억 9,600만원) 대비 73.4%인 114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자체수입을 147억 6,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여전히 예산 편성 시 자체 수입이 과다 계상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예산 과다 계상으로 인해 과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연내 목표한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잡월드는 민간직업체험기관 등 유사 서비스공급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적절한 규모의 자체수입을 계상하여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대표적인 민간 직업체험시설인 키자니아의 경우, 민간기업 체험부스를 넣거나 잡월드에 없는 공공직업체험관(관세공무원, 국세공무원, 지역난방공사)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16. 국토교통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130건으로 시정 32건, 주의 57건, 제도개선 68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40건이며, 조치중 17건으로 보고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2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교부액의 이월 방지’ 등 3건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토교통부	28	54	64	(0)	146	129	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3	0	(0)	6	6	0
새만금개발청	1	0	4	(0)	5	5	0
합계	32	57	68	(0)	157	140	17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국토교통부	2	2	0
합계	2	2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교부액의 이월 방지(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교부된 국비 보조금이 이월되는 등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였다.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이월이 발생하였고, 특히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보조금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여 계획만큼 차량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교부절차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반납수요 조사 및 재배분을 완료(2018.9.)하고, 집행실적 점검회의를 개최(2018.11)하는 등 시정요구를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회계연도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목표 대비 도입 실적도 저조하였다.

2018회계연도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7개 시도에서는 교부된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10개의 시도에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발생하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인천(65.0%), 광주(66.7%), 강원(30.8%), 충남(75.0%), 경북(64.3%)은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다.

[2018년도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 실적현황]

(단위: 천원, %)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서울	10,886,535	0	10,886,535	10,886,535	0	0	100.0
부산	2,199,312	0	2,199,312	2,199,312	0	0	100.0
대구	4,215,348	0	4,215,348	3,757,158	458,190	0	89.1
인천	1,832,760	0	1,832,760	1,191,294	641,466	0	65.0
광주	1,374,570	0	1,374,570	916,380	458,190	0	66.7
대전	2,016,036	506,847	2,522,883	2,522,883	0	0	100.0
울산	549,828	0	549,828	549,828	0	0	100.0
세종	412,371	0	412,371	412,371	0	0	100.0
경기	5,406,642	2,580,312	7,986,954	6,612,402	1,374,551	1	82.8
강원	595,647	0	595,647	183,276	412,371	0	30.8
충북	1,557,846	0	1,557,846	1,282,932	274,914	0	82.4
충남	164,888	0	164,888	123,666	41,222	0	75.0
전북	320,733	138,231	458,964	458,964	0	0	100.0
전남	229,095	92,154	321,249	275,430	45,819	0	85.7
경북	1,062,880	374,588	1,437,468	924,111	513,357	0	64.3
경남	316,136	0	316,136	316,136	0	0	100.0
제주	824,742	0	824,742	824,742	0	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2018년 일부 지자체의 실적현황이 낮은 상황에서 저상버스 도입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 도입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25% 목표 기준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3개 시·도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별 저상버스 도입 실적]

(단위: 대, %)

구분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
서울	7,405	3,332	45.0
부산	2,517	560	22.2
대구	1,521	526	34.6
인천	2,341	400	17.1
광주	1,041	213	20.5
대전	1,016	279	27.5
울산	830	96	11.6
경기	235	54	23.0
강원	10,548	1,343	12.7
충북	554	193	34.8
충남	586	122	20.8
세종	874	61	7.0
전북	827	182	22.0
전남	722	85	11.8
경북	1,177	164	13.9
경남	1,704	318	18.7
제주	389	88	22.6
계	34,287	8,016	23.4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버스사업자, 버스 제작업자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필요(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의 법정부담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이다.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법정부담금 수납률이 38.3%에 불과하여 수납률이 대체로 낮은 상황이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하여, 「도로법」 개정내용¹⁾을 바탕으로 법정부담금 수납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1) 원인자 부담금 징수 시 주소, 보험가입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 시 주소, 보험가입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2018.3.13.)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8.9.19.)을 완료하고, 차량 사고 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조치하였으며, 향후 법정부담금 수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법정부담금의 세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수납률은 38.3%, 2018년 수납률은 12.3%로 수납실적이 감소하였다.

[최근 2년간 교통시설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17	200	200	0	200	303	116	38.4	186	0
'18	200	200	0	200	196	24	12.3	172	0

자료: 국토교통부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주소, 보험가입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²⁾이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

2)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이전·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정)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이 감소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완료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는 법정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징수관리시스템 개선 등 징수노력을 보다 강화하여 법정부담금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주거급여 제도정착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확대를 위하여 2017년에는 72억 9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수급자 수가 당초 예상했던 3만 8,000가구보다 적은 7,000가구만 증가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의 3배 규모인 209억 3,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국회는 이와 관련하여 주거급여 사업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수급대상자 월별 증감 추세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하여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치완료보고를 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8회계연도의 주거급여 지원 사업추진 결과 주거급여지원 사업에서 202억 3,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8회계연도 주거급여지원 사업 결과, 재해복구비로 156억 5,900만원이 자체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주거급여 지원	1,125,210	1,125,210	143	△15,659	1,109,694	1,088,513	942	20,239

자료: 국토교통부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주거수급자 수를 46만 4,000가구로 추계하여 주거급여 사업 예산 편성시 총 1,081억 3,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실제 동 기간 동안 발생한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 수가 당초 추계한 가구 수 대비 21%에 해당하는 9만 7,000가구에 불과하여, 타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56억 5,900만원을 자체이용하고도 202억 3,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이후 연례적으로(2017년 제외) 타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이전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17. 여성가족위원회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은 총 36건으로 시정 2건, 주의 6건, 제도개선 29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31건이며, 조치중 5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및 산림센터 건립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 1건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9.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여성가족부	2	6	29	1	36	31	5
합계	2	6	29	1	36	31	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및 산림센터 건립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여성가족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사업 실집행률이 5.8%,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사업의 실집행률이 26.5%로 저조하였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향후 대규모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불용 및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건립 부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조속히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2019년 4월부터 착공예정(산림센터 '19.4월, 생태센터 '19.12월)으로 착공 이후에는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향후 건립사업 추진 건립예정 부지에 대하여 지자체와 충실한 검토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예산의 집행률이 2018년에도 생태센터 7.6%, 산림센터 9.5%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2018회계연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3억 2,700만원 중 2억 5,4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5억 4,4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7.6%이고,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현액 52억 6,200만원 중 5억 1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8,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2억 7,3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9.5%로 저조하였다. 또한, 2017년회계연도 결산 시 정요구 조치결과 내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산림센터 2019년 4월, 생태센터 2019년 12월 착공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산림센터가 2019년 6월 착공하는 등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지 못하였고 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생태센터 설계용역이 당초 계획('16.12~'17.7)대비 2년 지연(~'19.6)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의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향후에는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건설사업에서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 록

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최근 3년 간 2번 이상 지적된 사항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5	2016	2017
국회운영 위원회 (4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정평가관리		○	○
	국회	입법서비스지원활동	○	○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확대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	○	
법제사법 위원회 (24건)	법무부	국가배상금지급	○	○	○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 법제선진화		○	○
		법률구조		○	○
		서민법률보호를위한법률홈다터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
		검찰청시설운영	○	○	○
		국민생활 침해사범단속	○		○
		형사보상		○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	○	○
		직업훈련		○	○
		공자기금예탁	○	○	○
		징계부과금	○	○	○
		특수활동비	○	○	○
	법제처	법령정보제공		○	○
	대법원	면허료 및 수수료	○	○	○
		특수활동비	○		○
		교육원 인건비		○	○
		사법정책연구개선	○	○	○
		국선번호료 지원	○		○
		등기특별회계 기본경비	○		○
		연수원 인건비	○	○	○
		등기소 신·증축	○	○	○
		등기업무 운영지원비	○		○
	소송구조 지원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5	2016	2017
정무 위원회 (25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	○
		인권보호관 지원		○	○
		부패척결추진단 운영		○	○
		조세심판원	○	○	○
	공정거래위원회	세입	○	○	○
		카르텔 환경개선		○	○
	금융위원회	세입(과태료)	○	○	○
		산업은행·수출입은행출 자(해운보증기구)	○	○	○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		○
		성과계획서 관련	○		○
		신용보증기금(민간출연금)	○	○	○
		신용보증기금(기금관리비)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판매장려수당)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고자산매각대)		○	○
		인건비		○	○
		농어기금돈마련저축장려기금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 금(경남은행 매각 건)		○	○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금(일반회계전입금)	○	○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기술지원(ODA)		○
	부패신고자보호보상		○	○	○
	행정심판 운영			○	○
	국가보훈처	보훈병원진료	○	○	○
		보상금		○	○
		보훈정책개발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5	2016	2017
기획재정 위원회 (16건)	기획재정부	국세 수납률 제고	○	○	○
		연례적인 국세 초과세수 발생문제 개선	○	○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	○	○
		독도의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		○
		법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지양		○	○
		소비자물가관리	○	○	○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		○
		지식협력단지 운영		○	○
		지방자치단체 지원		○	○
		기타회계예수금	○	○	○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	○
		사업진행컨설팅	○	○	○
		중·장기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수립	○	○	○
		성과관리제도 개선	○	○	○
	국세청	징수위탁수수료	○		○
		인건비	○		○
교육위원회 (11건)	교육부	면허료 및 수수료		○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
		BK21 플러스사업		○	○
		한국장학재단 출연	○		○
		국립대병원 지원		○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
		교육급여	○	○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5	2016	201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5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	○	○
	방송통신 위원회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	○	○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 고 활성화 지원	○		○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	○
외교통일 위원회 (11건)	외교부	글로벌 협력강화		○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	○
		재외동포재단 출연	○		○
	통일부	과태료		○	○
		국내통일 기반조성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		○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		○
		통일업무지원		○	○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	○	○
		북한인권 개선정책 수립 및 추진		○	○
		민생협력지원		○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		○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자문회의운영	○	○	○
자문회의운영		○		○	
국방위원회 (5건)	국방부	병영생활관	○		○
		평택기지이전사업	○	○	○
	방위사업청	세입	○	○	○
		보라매사업(KF-X)(R&D)		○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5	2016	2017
행정안전 위원회 (10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탁선거관리	○		○
		예비금	○	○	○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추진		○	○
		연수원수입대체경비	○	○	○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	○
		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		○
		지방교부세	○		○
	인사혁신처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	○	○
	경찰청	경찰대학운영	○		○
		세입·과태료	○	○	○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13건)	문화체육관광부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	○	○
		지역신문발전 지원	○		○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	○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	○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	○
		저작권문화기반조성		○	○
		국회 감액사업 증액집행	○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	○	○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보조)	○	○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		○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	○
		국내외문화재긴급매입		○	○
		재해대책비	○	○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10건)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	○	○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		○
		농식품전문크라우드 펀딩		○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
		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		○	○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	○
	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		○
	산림청	세입	○		○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5	2016	201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 업위원회 (16건)	산업통상 자원부	기타기반 시설지원		○	○	
		소재부품기술개발	○	○	○	
		특별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	마케팅지원	○	○	○	
		창업사업화대학		○	○	
		창업선도대학육성		○	○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	○	○	
	특허청	발명장려문화조성	○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		○	
		일반회계 전출		○	○	
	보건복지 위원회 (24건)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	○	○
			의료급여경상보조	○	○	○
긴급복지				○	○	
장애인의료비지원			○	○	○	
차상위계층 지원			○	○	○	
지역아동센터 지원				○	○	
장애수당(기초)				○	○	
장애수당(차상위 등)				○	○	
장애인활동지원			○	○	○	
기초연금 지급			○	○	○	
장사시설 설치			○		○	
해외환자유치지원				○	○	
영유아보육료 지원			○	○	○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	○	○	
어린이집 확충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	
정신보건시설확충			○	○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	○			
국가금연 지원서비스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5	2016	2017
	식품의약품 안전처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		○	○
		식중독예방 및 관리		○	○
		천연물의약품안전관리	○		○
		세입		○	○
환경노동 위원회 (8건)	환경부	법정부담금	○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		○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	○
		구직급여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	○	○
		기상청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
	지진조기 경보 구축 및 운영		○		○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	○	○
국토교통 위원회 (13건)	국토교통부	지자체 보조사업 공통		○	○
		군위탁컨테이너 화물차 동차관리비 사업		○	○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	○	○
		항공박물관 건립		○	○
		고속도로 건설		○	○
		일반국도 건설		○	○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	○	○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	○	○
		흑산도 소형공항건설		○	○
	공항소음대책		○	○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복합편의시설 건립	○	○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투자유치지원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5	2016	2017
여성가족 위원회 (5건)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	○
		국립청소년수련시설건립	○	○	○
		청소년시설확충	○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 사업	○		○
		아이돌봄지원	○	○	○

주: 특정 세부사업에 국한되지 않으나 동일한 주제·내용의 지적이 있는 경우 1건으로 기재
(예: 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옥 사업평가심의관
정 승 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 춘 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 은 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 흥 업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윤 여 문 황 준 연 이 강 구 이 광 근
안 병 후 최 성 민 윤 성 식 김 은 영
정 순 철 하 정 희 이 미 선 남 희
김 려 진 김 성 은 권 순 진 어 예 원
이 영 주 최 경 덕 정 성 영 신 봉 진
황 수 환 정 주 완 민 성 철 박 은 영

지 원 | 윤 혜 정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IV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발간일 2019년 8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디자인 여백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075-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